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검토

오세욱·김창원·서정훈·홍유나·백용선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제 출 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검토”  
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0월

## 연구진

연구기관 :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책임자 : 오세욱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창원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 서정훈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 홍유나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 백용선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원)



# 요약문

- 연구기간 2022년 04월 ~ 2022년 10월
- 핵심단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선방안
- 연구과제명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검토

## 1. 연구배경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원가계산서 상 별도로 책정하도록 하여 건설 사업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법정 경비이다.

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근거하여 계상되며,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고시 제2022-43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국내에서는 건설 사업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법정 경비 계상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운영 기준에 있어 공종 및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는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은 건설산업의 대형화 및 다양화, 안전강화에 따른 법령 개정 등과 같은 환경 변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량 등이 포함된 도로공사는 현행 기준 상 건축공사와 같이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공사는 정해진 지역 내에서 수직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반면, 도로공사는 선형으로 수평적인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어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비중에는 차이

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한 공사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전담배치되는 경우,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사용비중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기간 등도 안전보건관리비의 부족 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건설산업의 생산환경 다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은 1988년 2월 고용노동부의 고시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공사종류 및 규모를 그대로 운영 하고 있어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의 계상 및 사용 측면에서 많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현 시점에서 건설업의 공사종류 및 규모별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건설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계상 기준 재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 2. 주요 연구결과

이 연구는 현실성이 확보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마련을 위해 ①이론적 고찰, ②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 ③실태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④고시 개정(안) 마련 및 적정성 검토 등을 수행하였다.

### 1) 이론적 고찰

이 연구는 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규정의 변천사 및 최근 개정사항, 관련 유사 연구, 선행 연구에 제시된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특성 등을 분석하여 연구 수행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였다.

### 2) 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

현행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를 위해 주요 발주기관 4개, 유관협회 3개, 건설사 19개 소속 실

무자를 대상으로 총 9회의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특히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의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발주기관 및 유관협회는 해당 기관이 관리하는 공사종류를 중심으로 인터뷰 대상을 설정하였으며, 실제 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주체인 건설사는 기업규모(대형, 중소형) 등을 고려하여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 3) 실태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연구진은 이론적 고찰, 이해관계자 인터뷰 결과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모형을 설계하였으며, 모형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 Pilot 테스트 등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적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검토된 실태조사 모형은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요 발주기관 및 유관협회의 협조를 통해 다양한 사업장에 배포하여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 4) 실태조사 결과 분석

이 연구는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정제과정을 거쳐 유효성이 확보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현행 공종 분류체계 내에서 약 20% 내외 정도 수준에서 초과 집행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근거로 1)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공종 재편에 따른 요율 개정(안)과 2) 현행 공종분류 기준에서 일부 시설물을 재편한 요율 개정(안)을 비교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대한 합리성 검토를 위해 제2차, 제3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과 토목, 타 법령에 의한 기타공사로 구분하고, 중건설분야는 기존 분류방식을 유지하는 요율 계상방식이 합리적이라는 검토 의견을 수렴하였다.

## 5) 고시 개정(안) 수립 및 적정성 검토

고시 개정(안)은 1)제3조(적용범위) 연간단가 공사는 총계약금액으로 조정하고, 2)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은 현장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 삽입, 3)별표 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과 토목, 타법령에 의한 기타공사,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에서의 중건설 등 총 4개의 공사종류에 대한 예시를 정리하였으며, 4) 별표 1(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에서는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의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의 상향은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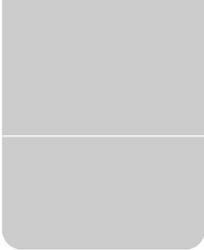
## 3. 결론

이 연구의 결과는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의 현실화를 통해 적정 집행을 유도하고 건설사업장내 근로자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건설업의 안전 관련 패러다임을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연구의 실태조사는 2022년도에 고시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의 확대 및 신설 항목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향후 해당 사용 항목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비 집행율을 추가 조사하여 개정 요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4.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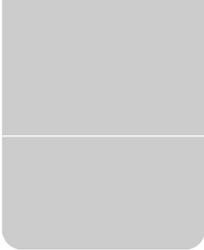
- 연구책임자 :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세욱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부 박주동 연구위원, 강성윤 과장
  - ☎ 052) 703. 0852
  - E-mail sungyun81@kosha.or.kr



# 목 차

|                                     |          |
|-------------------------------------|----------|
| <b>I. 서 론</b> .....                 | <b>3</b> |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 3        |
| 2. 연구목표 및 방법 .....                  | 4        |
| 3. 연구 추진 절차 .....                   | 6        |
| <br>                                |          |
| <b>II. 이론적 고찰</b> .....             | <b>9</b> |
| 1.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관련 규정 .....         | 9        |
| 2. 공사종류별 발주현황 분석 .....              | 20       |
| 3. 유사 선행 연구 분석 .....                | 23       |
| 4.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특성 분석 ..... | 24       |
| 5. 시사점 .....                        | 27       |

|                           |           |
|---------------------------|-----------|
| <b>Ⅲ. 이해관계자 인터뷰</b>       | <b>31</b> |
| 1. 개요                     | 31        |
| 2. 주요 인터뷰 결과              | 32        |
| 3. 시사점                    | 47        |
| <b>Ⅳ.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태조사</b>  | <b>51</b> |
| 1. 개요                     | 51        |
| 2. 실태조사 모형 설계             | 52        |
| 3. 실태조사 수집 방안             | 56        |
| 4. 파일럿 테스트를 통한 실태조사 모형 검증 | 58        |
| 5. 실태조사 실시                | 60        |



# 목 차

|                                 |           |
|---------------------------------|-----------|
| <b>V. 실태조사 분석 및 결과</b> .....    | <b>65</b> |
| 1. 실태조사 분석 대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 65        |
| 2. 실태조사 분석 .....                | 67        |
| 3. 고시개정 방향성에 대한 의견 수렴 .....     | 71        |
| 4. 안전보건관리비 요율 개정(안) .....       | 74        |
| 5. 전문가 자문 의견 수렴 .....           | 83        |
| <b>VI. 고시 개정(안)</b> .....       | <b>89</b> |
| 1. 고시 내용 개정 사항 .....            | 89        |
| 2. 고시 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       | 92        |
| <b>VII. 결론</b> .....            | <b>97</b> |

|                           |            |
|---------------------------|------------|
| <b>참고문헌</b> .....         | <b>101</b> |
| <b>Abstract</b> .....     | <b>103</b> |
| <b>부록</b> .....           | <b>107</b> |
| 1. 실태조사지 .....            | 107        |
| 2. (별표 5) 공사종류 및 예시 ..... | 112        |

# 표 목차

|   |    |
|---|----|
| 〈표 II-1〉 법정경비 산정 및 정산 근거                  | 10 |
| 〈표 II-2〉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의 변천사          | 11 |
| 〈표 II-3〉 고시 내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                 | 13 |
| 〈표 II-4〉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14 |
| 〈표 II-5〉 재료비 및 완제품 가액 포함여부에 따른 계상기준 적용 예시 | 14 |
| 〈표 II-6〉 최근 고시의 주요 개선사항 정리                | 15 |
| 〈표 II-7〉 안전보건관리비 비목별 사용범위                 | 16 |
| 〈표 II-8〉 최근 3년간 공사종류별 발주현황                | 20 |
| 〈표 II-9〉 발주건수 기준 공사금액 구간별 발주현황            | 21 |
| 〈표 II-10〉 유사 선행연구 분석 결과                   | 23 |
| 〈표 II-11〉 공사종류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특성 분석 결과     | 25 |
| 〈표 II-12〉 공사규모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특성 분석 결과     | 26 |
| 〈표 III-1〉 이해관계자 인터뷰 개요                    | 31 |
| 〈표 III-2〉 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현황 사례                | 32 |
| 〈표 III-3〉 사용항목별 집행 비중 조사 결과               | 33 |
| 〈표 III-4〉 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집행 주요 원인             | 34 |
| 〈표 III-5〉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생산체계 상 차이점          | 37 |
| 〈표 III-6〉 공사종류 재분류 필요 사례                  | 39 |
| 〈표 III-7〉 사업별 고유 특성 사례                    | 40 |
| 〈표 IV-1〉 안전보건관리비 실태조사 모형 구성               | 53 |

|  |    |
|--|----|
| 〈표 IV-2〉 안전보건관리비 실태조사 모형 - 공사종류 선택항목 .....     | 54 |
| 〈표 IV-3〉 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 조사 항목별 작성방법 .....        | 55 |
| 〈표 IV-4〉 협조요청 기관별 조사가능 범위 .....                | 58 |
| 〈표 IV-5〉 협회별 파일럿 테스트 요청 및 수집현황 .....           | 59 |
| 〈표 IV-6〉 실태조사 전처리과정 .....                      | 61 |
| 〈표 V-1〉 분석 데이터 개요 .....                        | 65 |
| 〈표 V-2〉 공사종류별 안전보건관리비 평균 집행률 .....             | 67 |
| 〈표 V-3〉 건축 및 토목공사의 차이 분석 .....                 | 69 |
| 〈표 V-4〉 공사종류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비중 분석 .....         | 70 |
| 〈표 V-5〉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액 적정성 인식조사 결과 .....          | 71 |
| 〈표 V-6〉 공사종류 재분류 필요성 인식조사 결과 .....             | 72 |
| 〈표 V-7〉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중 집행 부족항목 조사 결과 .....     | 73 |
| 〈표 V-8〉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 적정성 인식조사 결과 .....        | 74 |
| 〈표 V-9〉 공사종류 분류체계 재편방안 .....                   | 76 |
| 〈표 V-10〉 건설산업기본법 근거에 따른 공종별 산술평균 값 .....       | 78 |
| 〈표 V-11〉 건설산업기본법 근거에 따른 요율 개정(안) .....         | 80 |
| 〈표 V-12〉 현행 분류 내 일부 시설물 유형 재분류에 따른 요율 개정(안) .. | 82 |
| 〈표 VI-1〉 고시 제3조(적용범위) 개정(안) .....              | 90 |
| 〈표 VI-2〉 별표 5 건설공사 종류 개정(안) .....              | 91 |
| 〈표 VI-3〉 별표 1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개정(안) .....        | 92 |
| 〈표 VI-4〉 계상요율 상향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안) .....          | 93 |

# 그림목차

|  |    |
|--|----|
| [그림 Ⅰ-1] 연구목표 및 방법 .....                     | 5  |
| [그림 Ⅰ-2] 연구 추진 절차 .....                      | 6  |
| [그림 Ⅱ-1] 공사원가 구성 체계 .....                    | 9  |
| [그림 Ⅱ-2]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규정 .....            | 19 |
| [그림 Ⅲ-1] GH 안전보건관리비 추가정산 관련 언론보도 .....       | 36 |
| [그림 Ⅲ-2] 하도급사 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현황 분석 결과 .....      | 43 |
| [그림 Ⅲ-3] 하도급사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정성 분석 결과 .....     | 43 |
| [그림 Ⅲ-4] 원도급자의 안전보건관리비 미인정 사례 조사 결과 .....    | 44 |
| [그림 Ⅳ-1] 실태조사 수행 절차 .....                    | 51 |
| [그림 Ⅳ-2] 유관 협회 및 발주기관 실태조사 협조체계 및 수집방안 ..... | 57 |
| [그림 Ⅳ-3] 협조요청 기관별 실태조사 배포 방식 .....           | 60 |
| [그림 Ⅴ-1] 분석 데이터의 DB화 결과 .....                | 66 |
| [그림 Ⅴ-2] 요율 개정 산출 방법 .....                   | 77 |
| [그림 Ⅴ-3]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결과 .....                | 86 |



# I. 서론





#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원가계산서 상 별도로 책정하도록 하여 건설 사업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법정 경비이다. 이와 같은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체계는 타 산업 대비 옥외 현장작업 중심으로 생산과정이 수행되는 건설업에 있어 사업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의 재해를 감소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근거하여 계상되며, 「계약예규」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공사원가 제비율 기준의 경비 항목의 하나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율을 반영하여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시 제2022-43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로서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요율을 공사 종류 및 규모별로 차등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설 사업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 기준은 건설산업의 대형화 및 다양화, 안전강화에 따른 법령 개정 등과 같은 환경 변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행 기준에서 건축공사, 교량이 포함된 도로공사 등은 일반건설공사(갑)의 범위 내에 동일하게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건축공사는 정해진 지역 내에서 수직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며, 도로공사는 선형으로 수평적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고유 특성을 갖고 있어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비중은 다

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나,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공사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전담 배치되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대한 사용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공사기간은 안전보건관리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기준은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안전관리자 겸임 배치기준(2023년 7월 시행 겸임기준)이 50억원까지 확대될 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규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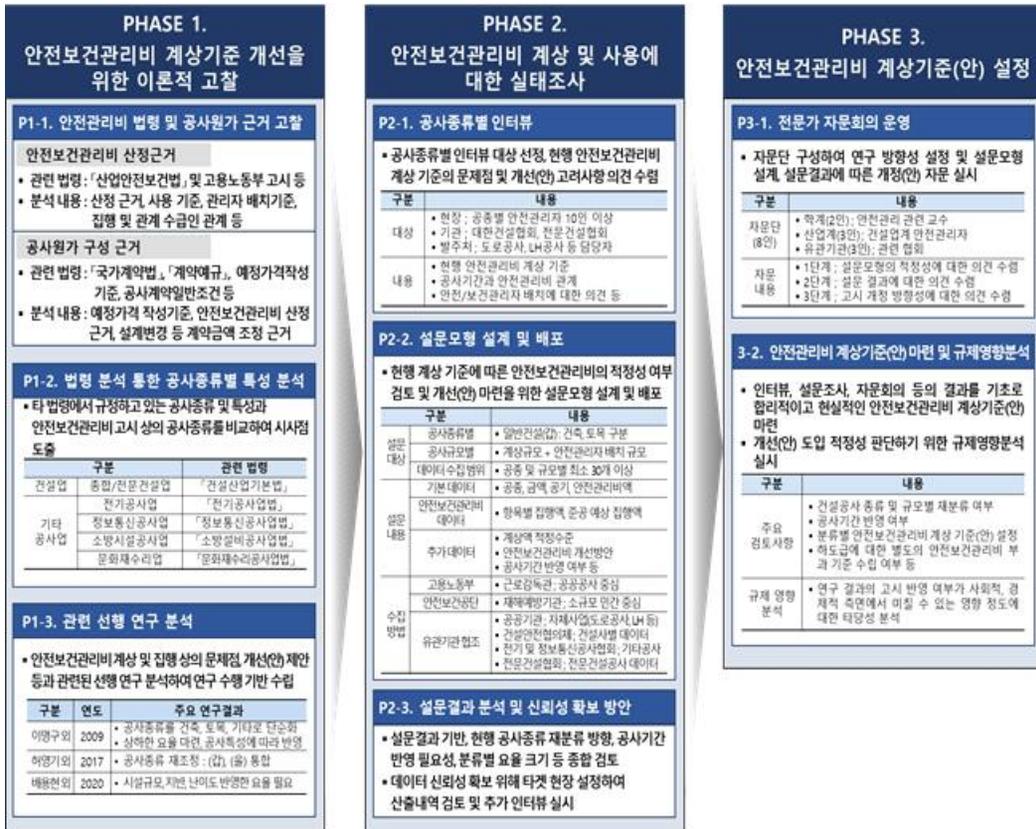
이와 같은 건설산업의 생산 환경 다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관리비는 1988년 2월 고용노동부 고시로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공사종류 및 규모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건설 사업장마다 적정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있어 많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 시점에서 건설업 환경변화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운영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근로자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안전보건관리비의 합리적인 계상 기준을 재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개선(안)은 공사종류 재정립 및 요율 개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 규모를 현실화하고, 현실적인 집행을 유도하여 건설업의 안전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건설산업의 발전과 건설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연구목표 및 방법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건설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운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세부적인 연구목표

및 방법은 그림 I-1과 같다.



[그림 I-1] 연구목표 및 방법

첫째, 주요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의 문제점, 개선 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연구추진에 관한 방향성을 정립한다.

둘째,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항목별 운영 특성, 현행 계상요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공사종류 및 규모별 고유 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도출한다.

셋째, 현행 고시에서 규정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선방안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지급체계,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시 재계상 기준 마련 필요성 등이 반영된 고시 개정(안)을 제시하고, 개정(안) 도입이 미치는 효과성 검토를 위해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한다.

### 3. 연구 추진 절차

이 연구는 그림 I-2와 같이 2022년 4월 4일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관련 법령 및 선행연구 고찰, 주요 이해관계자(발주기관, 유관협회, 건설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등) 인터뷰 및 시사점 도출, 전문가 자문(1차) 및 파일럿테스트를 통한 실태조사 모형 적정성 검증 및 데이터 수집, 수집 데이터 기반 공중 분류 체계 재편에 따른 계상요율(안) 등 연구결과 도출 및 전문가 자문회의(2차 및 3차)를 통한 연구결과 합리성 검토, 연구결과 기반 현행 고시 개정방향 제시 및 규제영향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그림 I-2] 연구 추진 절차

## Ⅱ. 이론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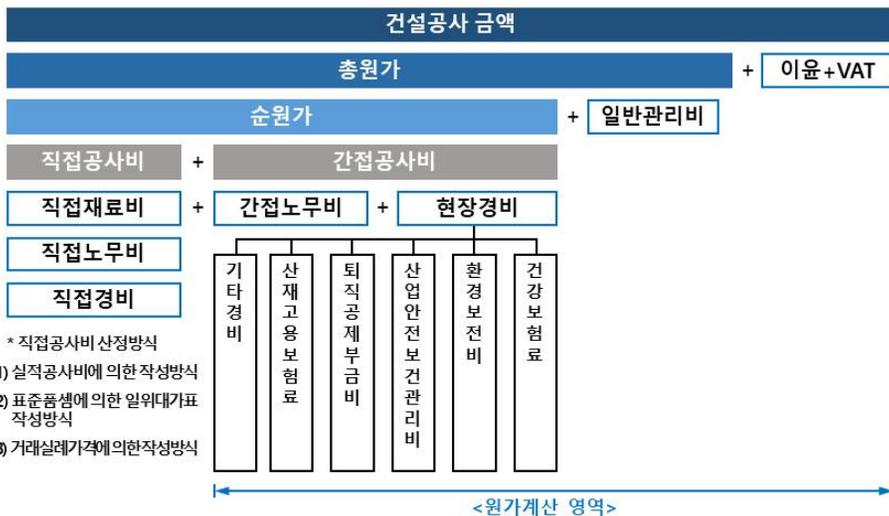
## II. 이론적 고찰

### 1.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관련 규정

#### 1) 공사원가구성과 안전보건관리비

정부공사는 자금의 원천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특성 상 시설물의 목적성 완수와 함께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게 되며, 예정가격은 ‘해당 공사비 산정의 근거인 동시에 수요기관과 시공자 간의 가격 결정 잣대’로서 운영되고 있다. 예정가격의 작성방법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근거하며, 그림 II-1과 같이 공사원가 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그림 II-1] 공사원가 구성 체계

그림에서와 같이 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원가(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직접 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의 간접공사비 구성항목 중 현장경비 내 하나의 비목으로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현장경비 구성항목 중 안전보건관리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및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요율이 아닌 관련 정부부처(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운영하는 법정경비로서 요율 자체가 고정되고 공사 진척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공사원가 구성항목에 포함되는 현장경비 안에서의 법정경비에 대한 요율 산정 및 정산 관련 법적 근거는 표 II-1과 같으며, 이 연구의 대상인 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표 II-1〉 법정경비 산정 및 정산 근거

| 구분                   | 산정 및 정산 근거  |
|----------------------|---|
| 안전보건관리비              | (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br>(정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
| 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 (산정)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br>(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
| 환경보전비                | (산정)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br>(정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
|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수수료        | (산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br>(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  |
|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 (산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br>(정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 산재보험료                | (산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제14조<br>(정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12조 |

## 2)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1)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변천사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과 관련된 기준은 표 II-2와 같이 1988년 2월 고용노동부 고시로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28여 차례에 걸쳐 계상 및 집행 기준, 사용항목, 목적 외 사용,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조정 및 계상방법 등에 대해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표 II-2〉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의 변천사

| 구분           | 주요내용   |
|--------------|--|
| 고시 제88-13호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제정   |
| 고시 제89-04호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시행 일자 1989.02.10   |
| 고시 제91-39호   | • 해당 고시 시행을 통해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 폐지<br>• 장기계속 공사에 대한 계상 기준   |
| 고시 제96-36호   | • 기술지도 계약 관련 사용항목 기준 신설  |
| 고시 제99-11호   | • 자가 공사자에 대한 적용 기준   |
| 고시 제2002-15호 | • 기술지도 대가에 대한 사용 기준  |
| 고시 제2008-67호 |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기준에 대한 내용   |
| 고시 제2013-47호 |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개정  |
| 고시 제2017-08호 | • 보건관리자 배치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br>• 정보통신공사 중 단가계약 공사에 대한 적용 사례  |
| 고시 제2018-72호 | • 계상항목 및 계상시기 등의 적용  |
| 고시 제2019-64호 |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범위 확대  |
| 고시 제2022-43호 | •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유연성 강화를 위한 사용항목 개선 : 사업주의 적극적인 산재예방조치 관련 비목 신설, 스마트 안전제품 사용, 타법 의무교육 관련 비용 등 사용항목 확대<br>• 기존 고시 별표 2로 규정된 사용불가기준 삭제<br>•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증액 시 별표 1의3이 아닌 보건관리자 선임 공사요율 적용 |

고용노동부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2013년 10월(고시 제 2013-47호)에는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25년 만에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17년 2월(고시 제2017-08호)에는 보건 관리자 배치 여부에 따른 별도의 적용 요율이 신설되었고, 2019년(고시 제 2019-64호)에는 8가지 사용항목에 있어 보다 현실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 융통성 측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2022년 발표된 최근 고시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 사업주의 적극적인 산재예방조치에 활용하기 위한 비목 신설(9. 위험성 평가 등에 대한 소요비용),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비용 허용, 산재예방 관련 모든 안전보건교육 비용 허용 등 사용 유연성 측면을 중심으로 개정된 바 있다.

이와 같이 건설업에서 발생 가능한 근로자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보건관리비는 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개선 노력이 수행되어 왔으나,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계상되는 안전보건관리비의 현실적인 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요율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예상된다.

## (2) 현행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분석

### 가)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사업

고용노동부 고시(제2022-43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sup>1)</sup>이며, 공사종류는 표 II-3과 같이 일반건설공사(갑) 및 (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 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공사 등 5개로 구분하고 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는 총계약금액 기준 적용 : ① 「전기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표 II-3〉 고시 내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

| 구분           | 공사종류 예시   |
|--------------|---|
| 일반건설공사(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건설, 도로신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를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br/>예시) 건축물(주택, 학교, 강당, 체육관, 사무소, 백화점, 점포, 공장, 발전소, 연구소, 병원, 기념물 등), 건축 관련 설비공사, 토목(교량, 도로), 철도 및 궤도 복구공사, 공작물 해체 및 철거공사, 준설 및 간척공사, 비행장, 경기장 등 조성 공사 등</li> </ul> |
| 일반건설공사(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기계 및 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br/>예시) 각종 기계 기구장치 공사, 석도건설공사, 화력 및 원자력 발전 시설공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공해방지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통신장비 일체 공사</li> </ul>  |
| 중건설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제방(댐), 수력발전시설, 터널 등 신설공사</li> </ul>   |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 또는 궤도 등을 신설하는 공사</li> </ul>   |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 장소적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로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 등</li> </ul>  |

나) 공사종류 및 규모별 계상 기준

공사종류 및 규모별로는 표 II-4와 같이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 합계)을 기준으로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과 같이 3개 규모로 구분하고 있으며<sup>2)</sup>, 또한 보건관리자<sup>3)</sup> 선임기준에 따른 별도의 요율을 운영하여 총 4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2) 하나의 사업장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 제외)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 적용. 또한 대상액 산정 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 형태로 제작·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및 완제품 가액을 제외하여 산정된 비용이 포함된 비용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3) 보건관리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5에 따라 건축공사는 총공사비 800억원(토목공사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 별도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또한 공사금액 1,400억원 증가,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추가 시 마다 보건관리자 1명씩 추가 배치하여야 함.

미만인 사업은 타 공사규모에서의 산정방식과는 달리 대상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더하여 산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표 II-4〉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구분        | 대상액(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재료비) × 요율 |              |             |          |       |
|-----------|---------------------------|--------------|-------------|----------|-------|
|           | 5억 미만                     | 5억 이상 50억 미만 | 50억 이상      | 보건관리자 배치 |       |
| 일반건설공사(갑) | 2.93%                     | 1.86%        | +5,349,000원 | 1.97%    | 2.15% |
| 일반건설공사(을) | 3.09%                     | 1.99%        | +5,499,000원 | 2.10%    | 2.29% |
| 중건설공사     | 3.34%                     | 2.35%        | +5,400,000원 | 2.44%    | 2.66% |
| 철도 및 궤도   | 2.45%                     | 1.57%        | +4,411,000원 | 1.66%    | 1.81% |
| 특수 및 기타   | 1.85%                     | 1.20%        | +3,250,000원 | 1.27%    | 1.38% |

위와 같은 공종 및 공사규모, 보건관리자 배치여부 외에도 현행 고시에서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 형태로 제작·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표 II-5와 같이 해당 재료비 및 완제품 가액의 포함 여부를 비교하여 계상할 수 있는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표 II-5〉 재료비 및 완제품 가액 포함여부에 따른 계상기준 적용 예시

| 고시 제4조제1항 : 재료비와 완제품 가액을 제외한 비용이 포함된 비용의 1.2배 초과 불가<br>[가정 : 일반공사(갑), 직접노무비 200,000천원, 관급자재비 350,000천원, 자재비 250,000천원] |   |                 |                                  |   |
|--|---|-----------------|----------------------------------|---|
| 구분   | 대상액(천원)                                     | 금액 적용기준         | 안전보건관리비(천원)                      | 검토  |
| A. 관급자재비 포함  | 200,000<br>+350,000<br>+250,000<br>=800,000 | 5억 이상<br>50억 미만 | 800,000 × 1.86%<br>+5,349=20,229 | A ÷ B = 1.5<br>(1.2배 초과 →<br>계상금액은<br>B × 1.2 = 15,822<br>천원) |
| B. 관급자재비 제외  | 200,000<br>+250,000<br>=450,000             | 5억 미만           | 450,000 × 2.93%<br>=13,185       |   |

또한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재료비 합계)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지체없이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설계변경시 안전보건관리비 조정·계상에 관한 기준을 별표 1의3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의 요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적인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 다) 사용항목

최근 개정 고시(제2022-43호)에서 가장 많은 개정이 이루어진 부분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험성 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비목을 신설하여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비목이 9개로 개정되었으며, 과거 별표 2로서 운영되어 오던 사용불가항목 기준을 폐지하고 사용항목에 관한 사항을 고시 제7조로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비목에 있어서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활용 근거 명시, 타 법에서 규정된 안전보건교육 소요비용 허용 등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주요 개선사항을 요약하면, 표 II-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6〉 최근 고시의 주요 개선사항 정리

| 항목          | 과거                                | 현행  |
|-------------|-----------------------------------|---|
| 1. 인건비      | • 겸직 안전관리자 임금 사용 불가               | • 겸직 안전관리자 임금의 50%까지 사용 가능                |
| 2. 시설비      | • 공사수행 목적이 포함된 스마트 안전 장비 구입·사용 불가 |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입대비의 20% 이내 허용(계상금액 10% 범위) |
| 3. 보호구      | • 사용가능한 보호구의 정의 불분명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로 명확화     |
| 4. 안전보건 진단비 | • 안전순찰차량 유류비 등은 비목 성격 상 부적절       | • 보호구 등 항목으로 이동                           |
| 5. 안전보건 교육비 | • 「산업안전보건법」 외 법령 상 안전교육 비용 사용불가   | • 산재예방 관련 모든 교육비용 허용                      |

| 항목             | 과거   | 현행   |
|----------------|--|--|
| 6. 건강장해 예방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손소독제, 체온계, 진단키트 등 코로나 종료 시까지 한시 허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손소독제, 체온계, 진단키트 등 상시 허용</li> <li>휴게시설 온도, 조명 설치·관리 소요비용 허용('23.8.18부터)</li> </ul> |
| 7. 기술지도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용한도(계상 금액의 20%)로 소규모 현장 기술지도 횟수 부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용한도 규제 폐지 ('22.8.18까지 적용)</li> </ul>   |
| 8. 본사 인건비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사 안전전담부서(3명 이상) 직원 인건비 등(총액 5%, 연 5억원 이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억원 한도 폐지(5%는 유지)</li> <li>단, 시평액 1위~2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 사용 제한</li> </ul>              |
| 9. 위험성 평가 등 비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법 상 유해·위험요인 개선 판단을 통해 발굴하여 노사 간 합의로 결정된 품목 허용(총액 10% 내)</li> </ul>   |

위와 같은 개정 사항이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비목별 사용범위는 표 II-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7> 안전보건관리비 비목별 사용범위**

| 구분              | 사용범위   |
|-----------------|--|
|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li> <li>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1/2에 해당하는 비용</li> <li>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li> <li>별표 1의2(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업무수당(임금의 10% 이내)</li> </ul> |
| 2. 안전시설비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li> <li>「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계상된</li> </ul>  |

| 구분               | 사용범위  |
|------------------|---|
|                  |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초과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li> </ul>  |
| 3. 보호구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li> <li>• 근로자가 위의 보호구를 직접 구매·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li> <li>•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별표 1의2에 규정된 관리감독자 제외)</li> <li>• 전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li> </ul>   |
| 4. 안전보건진단비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li> <li>•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li> <li>•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li> <li>•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li> </ul>  |
|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li> <li>• 위 교육 외에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li> <li>•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 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li> <li>•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지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지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정)</li> <li>•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li> </ul> |
|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li> <li>• 중대재해 목적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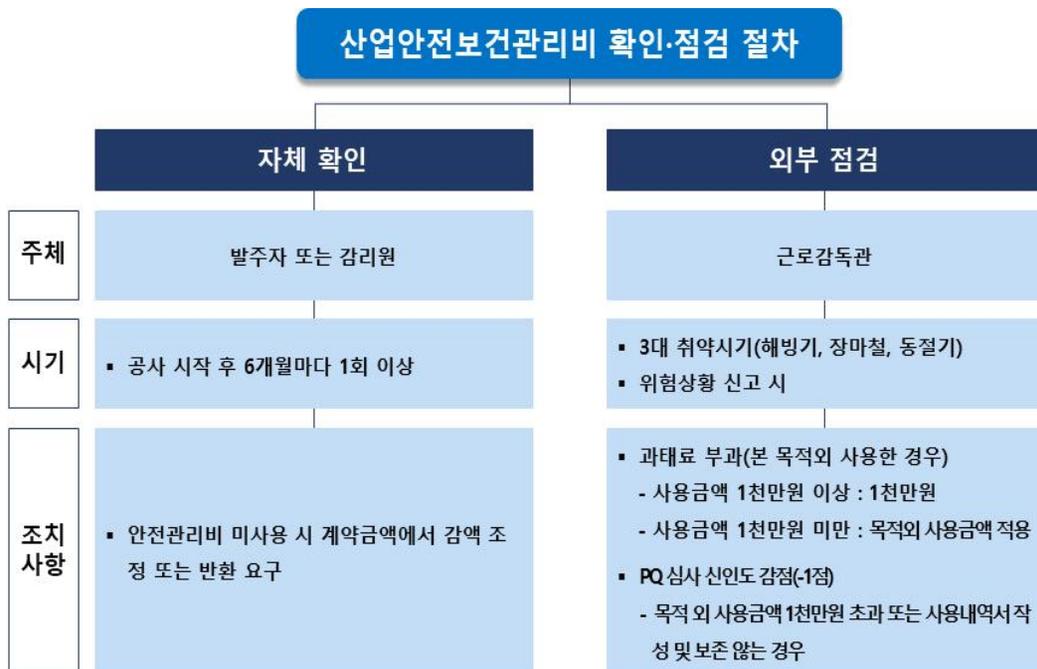
| 구분                    | 사용범위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li> <li>•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li> </ul> |
|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li> </ul>   |
|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인건비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계상금액 총액의 5% 이내)</li> <li>• 단, 시평액 2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 사용 불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 규정 사업자)</li> </ul>                |
| 9. 위험성 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계상금액 총액의 10% 이내)</li> </ul>   |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확인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은 고시 제9조에 근거하여 공사착수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관계 공무원 및 발주자는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다. 법령에 근거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검사 절차는 그림 II-2와 같이 사업장 자체 검사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외부 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

자체검사의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검사 주체가 되어 공사 착수 시점부터 6개월 마다 1회 이상 사용 검사를 실시하며, 고시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에 근거하여 목적 외 사용 및 미사용 시 발주자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계약금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외부 검사는 고용노동부 산하 6개의 지청 소속의 감독관이 3대 취약 시기(해빙기, 장마철, 동절기)와 민원신고를 통해 사용 검사를 실시하며, 안전보건관리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사용 내역을 미작성하였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자체 및 외부 검사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 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PQ 심사 대상공사<sup>4)</sup>에서 신인도 감점(-1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림 II-2]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규정

4) PQ 대상 ; 입찰참가 사전자격 심사 대상공사를 의미하며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중 고난이도 공사(18개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

## 2. 공사종류별 발주현황 분석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된 건설공사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정한 5개 공사 종류별 발주현황을 조사하였다.

나라장터<sup>5)</sup>를 통해 발주된 사업은 표 II-8과 같이 연평균 33만여 건으로 발주된 총액은 약 48조여억원이며, 이 중 건수 기준으로 '일반건설(갑) 62.58% > 기타공사 32.01% > 일반건설(을) 5.33% > 중건설 0.07% > 철도궤도 0.01%'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또한 금액 기준으로 검토해본 결과, '일반건설(갑) 81.72% > 기타공사 14.27% > 중건설 2.04% > 일반건설(을) 1.92% > 철도궤도 0.06%'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표 II-8〉 최근 3년간 평균 공사종류별 발주현황

| 구분      | 건수 기준   |         | 금액 기준      |         |
|---------|---------|---------|------------|---------|
|         | 건       | 비중      | 백만원        | 비중      |
| 일반건설(갑) | 208,680 | 62.58%  | 39,509,682 | 81.72%  |
| 일반건설(을) | 17,772  | 5.33%   | 926,726    | 1.92%   |
| 중건설     | 227     | 0.07%   | 985,792    | 2.04%   |
| 철도·궤도   | 44      | 0.01%   | 30,419     | 0.06%   |
| 기타      | 106,754 | 32.01%  | 6,897,946  | 14.27%  |
| 합계      | 333,476 | 100.00% | 48,350,566 | 100.00% |

5) 나라장터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으로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과 개찰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자자체인 전자조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일부 공공기관이 발주한 데이터는 누락될 수 있다.

고시에서 정한 공사 금액 구간별 발주 건수를 살펴보면, 표 II-9와 같이 일반건설(갑) 및 일반건설(을), 기타 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 미만 공사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9〉 발주건수 기준 공사금액 구간별 발주현황

| 구분      | 5억 미만   |        | 5억~50억 미만 |        | 50억~120억 미만 |        | 120억 이상 |        |
|---------|---------|--------|-----------|--------|-------------|--------|---------|--------|
|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 일반건설(갑) | 198,071 | 94.92% | 9,194     | 4.41%  | 867         | 0.42%  | 548     | 0.26%  |
| 일반건설(을) | 17,456  | 98.23% | 304       | 1.71%  | 11          | 0.06%  | -       | 0.00%  |
| 중건설     | 90      | 39.82% | 80        | 35.42% | 32          | 13.96% | 25      | 10.80% |
| 철도·궤도   | 26      | 58.56% | 17        | 38.02% | 2           | 3.42%  | -       | 0.00%  |
| 기타      | 104,651 | 98.03% | 2,038     | 1.91%  | 53          | 0.05%  | 12      | 0.01%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건설(갑)의 경우, ‘5억원 미만(94.92%) > 5억원~50억원 미만(4.41%) > 50억원~120억원 미만(0.42%) > 120억원 이상(0.26%)’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반건설(을) 및 기타공사도 이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중건설의 경우에는 ‘5억원 미만 39.82% > 5억원~50억원 미만 35.42% > 50억원~120억원 미만 13.96% > 120억원 이상 10.80%’순으로 비교적 중대형 규모로 발주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시에서 정한 공사 금액 구간별 발주 금액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건설(갑)의 경우, ‘120억원 이상 34.78% > 5억~50억원 미만 28.50% > 5억 미만 22.61% > 50억~120억원 미만 14.10%’순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일반건설

(을) 및 기타공사의 경우,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 발주 분포가 많으며 중건설의 경우, 공사규모가 클수록 발주 분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sup>6)</sup>.

일반건설(갑)의 경우, 앞서 설명한 공사금액 구간별 발주 건수 점유 비중에 비해 발주금액 분포가 120억원 이상에 많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일반건설(갑)으로 발주되는 공사 중 일부는 대형공사로 발주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6) 공사금액 구간별 발주금액 분포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하단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구분    | 5억 미만       |           | 5억~50억 미만   |           | 50억~120억 미만 |           | 120억 이상     |           |
|-------|-------------|-----------|-------------|-----------|-------------|-----------|-------------|-----------|
|       | 금액<br>(백만원) | 비중<br>(%) | 금액<br>(백만원) | 비중<br>(%) | 금액<br>(백만원) | 비중<br>(%) | 금액<br>(백만원) | 비중<br>(%) |
| 일반(갑) | 8,933,552   | 22.61%    | 11,261,880  | 28.50%    | 5,572,274   | 14.10%    | 13,741,976  | 34.78%    |
| 일반(을) | 573,272     | 61.86%    | 284,166     | 30.66%    | 69,288      | 7.48%     | -           | 0.00%     |
| 중건설   | 8,090       | 0.82%     | 145,960     | 14.81%    | 202,154     | 20.51%    | 629,589     | 63.87%    |
| 철도궤도  | 2,327       | 7.65%     | 23,262      | 76.47%    | 4,831       | 15.88%    | -           | 0.00%     |
| 기타    | 4,328,692   | 62.75%    | 2,020,688   | 29.29%    | 318,567     | 4.62%     | 229,999     | 3.33%     |

### 3. 유사 선행 연구 분석

안전보건관리비가 법적 경비로서 계상될 수 있는 기준이 고시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수행된 유사 선행 연구들은 표 II-10과 같다.

〈표 II-10〉 유사 선행연구 분석 결과

| 연도   | 발표기관   | 연구제목                                     | 주요내용                                   |
|------|--------|--|--|
| 2005 | 안전보건공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및 적정 요율에 관한 조사 연구    | 계약 및 집행내역 비교를 통한 공종별 계상요율 적정성 검토       |
| 2009 | 안전보건공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운영의 효율성 강화 방안 연구            | 공종별 계상요율 및 사용항목 기준 적정성 분석              |
| 2012 | 안전보건공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 및 적정 계상 요율에 관한 조사 연구 | 안전보건관관리비 계상 요율 현실화 방안 검토               |
| 2014 | 안전보건공단 |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운영 실태조사 분석 연구             | 공사규모별 안전 관리자 선임기준 확대 방안 검토             |
| 2015 | 안전보건공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및 사용기준 개선방안 연구       | 보건관리자 배치를 고려한 적정 계상 요율 검토              |
| 2015 | 건설관리학회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측 모델 개발                   | 50억원 미만 일반공사(갑) 대상 다양한 독립변수 기반 예측모델 제시 |
| 2017 | 안전보건공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선방안 연구               | 공종 재조정 및 계상 요율 조정 필요성 제시               |
| 2020 | 건설관리학회 | 대규모 건설현장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 공사특성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개선 필요성 제시     |
| 2020 | 재난정보학회 | 건설안전전문가 설문조사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비 제도개선 연구   | 물가상승을 등을 고려한 계상요율 개선 필요성 제시            |
| 2021 | 안전보건공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명성 및 사용성 개선 연구            | 스마트 안전장비 등 사용항목 확대에 따른 요율 개선 필요성 제시    |

분석 결과, 선행연구들에서는 공사종류 및 규모 등 사업의 고유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의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연구(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및 적정계상 요율에 관한 조사연구)는 안전보건관리비의 요율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 바 있으며, 2015년 연구(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및 사용기준 개선방안 연구)는 보건관리자의 배치에 따른 요율기준을 연구결과로 제시하여 고용노동부 고시로서 반영한 바 있다. 또한 2017년 연구(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인 공종을 재분류하고, 공사특성 등을 반영한 요율 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2021년 연구(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명성 및 사용성 개선 연구)는 스마트 안전장비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사용항목의 확대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고유한 사업특성 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즉, 선행연구들은 공사종류 및 규모, 고유한 사업 특성,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의 확대 등과 같은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 4.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특성 분석

유사 선행 연구 중 하나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 및 적정 계상요율에 관한 조사연구(2012년)’에 따르면,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특성에는 상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우선 공사종류를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II-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11〉 공사종류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특성 분석 결과

(단위 : %)

| 구분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비목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1~3 합계 |
| 일반건설(갑) | 29           | 34 | 22 | 2 | 6  | 3 | 5 | 1 | 85     |
| 일반건설(을) | 26           | 24 | 33 | 3 | 5  | 3 | 6 | 0 | 83     |
| 중건설     | 44           | 30 | 14 | 3 | 6  | 2 | 0 | 1 | 88     |
| 철도·궤도   | 39           | 30 | 16 | 4 | 7  | 3 | 0 | 1 | 85     |
| 특수 및 기타 | 29           | 25 | 34 | 1 | 3  | 2 | 4 | 1 | 88     |
| 전기      | 20           | 24 | 36 | 2 | 9  | 4 | 5 | 0 | 80     |
| 정보통신    | 20           | 25 | 37 | 2 | 13 | 5 | 5 | 1 | 82     |

\* 사용비목 :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구입,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기술 지도비 등, 8. 본사 사용비

공사종류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일반건설공사(갑)은 ‘안전시설비(34%) > 안전관리비 등 인건비(29%) > 개인보호구(22%)’의 순으로 사용비중이 높게 분포되어 있으며, 중건설은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44%) > 안전시설비(30%) > 개인보호구(14%)’로, 정보통신공사는 ‘개인보호구(37%) > 안전시설비 등(25%) >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20%)’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즉, 대부분의 안전보건관리비는 인건비 및 시설비, 개인보호구 구입 등의 비목에서 평균적으로 전체 비용의 약 84% 수준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해당 사업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목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실제 안전관리자와의 사전 인터뷰를 통해 동일 공사 종류 내에서도 사용 항목 비중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예를 들어 교량 등이 포함된 도로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보다는 중건설과 유사하게 같이 ‘인건비’ 비목의 사용 비중이 높은 형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공사규모에 따른 안전관리자 다수 배치, 기

계투입 중심 작업 특성에 따른 신호수 등 배치, 장기간의 공사기간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상승 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다음으로 공사규모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II-12와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규모 공사일수록 ‘개인보호구 구입비용 > 안전시설비 >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순으로 비중이 높으며, 대규모 공사일수록 ‘안전관리비 등 인건비 > 안전시설비 > 개인보호구 구입비용’ 순으로 사용 비중이 높게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사 규모가 증가할수록 ①장기공사 및 공기연장 등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상승, ②고난이도·고위험 복합공종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시설 설치 등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12〉 공사규모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특성 분석 결과

(단위 : %)

| 구분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비목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 5억원 미만           | 13           | 24 | 47 | 1 | 5 | 3 | 7 | 0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7           | 26 | 35 | 2 | 8 | 4 | 7 | 1 |
|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37           | 27 | 20 | 3 | 8 | 3 | 2 | 1 |
| 300억원 이상         | 37           | 37 | 13 | 3 | 6 | 2 | 0 | 1 |

\* 사용비목 :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구입,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기술 지도비 등, 8. 본사 사용비

따라서 공사종류, 공사규모, 공사기간 등과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특성 간 연관관계를 검토하여 현실적인 계상요율 반영 방안에 대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5. 시사점

건설 안전은 전통적으로 해당 사업의 공사기간, 품질, 공사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건설사업관리 요소로 평가되어 왔으며, 특히 2022년 1월부터「중대재해처벌법」<sup>7)</sup>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에 있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근로자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안전보건관리비의 현실적인 계상 및 집행 기준의 마련은 성공적인 건설안전관리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검토한 안전보건관리비의 현실적인 계상기준(안) 마련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행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내 공사종류 및 규모별 분류체계의 개선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기준에서 공사 종류는 과거 산재가입 시 사용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공사 종류이나, 2000년 이후 해당 기준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현행 분류체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의 고유 특성에 대한 반영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예. 일반공사(갑) 내 건축공사와 교량이 포함된 토목공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공사규모의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 정책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공사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등 사업별 고유 특성이 반영된 현실적인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최근 발표된 고용노동부 고시(제2022-43호) 및 선행 연구 등에서 제시된 사용항목의 확대 등 추세를 고려한다면, 현행 요율 기준으로 계상되는 안전보건관리비의 규모는 현실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

7)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내 근로자가 사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법령위반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서 위반시 법적 처벌을 부과하는 방안

근 개정된 고시에서는 겸직 안전관리자 임금의 50%까지 사용 인정,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의 20%까지 사용인정(계상금액 10% 내), ‘위험성 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비목 신설 등과 같이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유연성 측면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적인 변화에 건설 사업장이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이 전제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실태조사 모형에 해당 사항의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따른 관계 수급인 간 지급 기준에 대한 검토 등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로 제시될 고용노동부 고시 개선(안)의 도입 당위성을 판단하기 위한 규제영향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Ⅲ. 이해관계자 인터뷰





### Ⅲ. 이해관계자 인터뷰

#### 1. 개요

이 연구는 현 시점에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집행 측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근거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터뷰는 표 Ⅲ-1과 같이 발주기관 4개, 유관협회 3개, 건설사 9개를 대상으로 대면방식을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며, 총 9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발주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터뷰 대상 여건으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하여 진행하였다.

〈표 Ⅲ-1〉 이해관계자 인터뷰 개요

| 구분       |                   | 일시        | 인터뷰 방식 |
|----------|-------------------|-----------|--------|
| 발주<br>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22.05.26 | 비대면    |
|          | 한국도로공사(건설사 8개 포함) | '22.04.26 |        |
|          | 한국수자원공사           | '22.06.08 |        |
|          | 국가철도공단(건설사 2개 포함) | '22.06.08 |        |
| 유관<br>협회 | 전문건설협회            | '22.05.31 | 대면     |
|          | 전기공사협회            | '22.04.21 |        |
|          | 정보통신공사협회          | '22.04.21 |        |
| 건설사      | 대형건설사(5개)         | '22.04.05 | 대면     |
|          | 중·소형건설사(4개)       | '22.04.19 |        |

인터뷰는 ①현행 계상요율의 적정성, ②안전보건관리비의 초과집행 사유, ③요율 분류체계 개선 필요성, ④기타(연간단가계약공사의 계상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 2. 주요 인터뷰 결과

### 1) 현행 계상요율의 적정성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요율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실제 건설 현장에서 집행되는 안전보건관리비는 계상 금액 대비 건축 100~150%, 토목 120~170% 수준에서 초과 집행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sup>8)</sup>. 이와 같은 의견은 표 III-2와 같이 일부 발주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의 사례에서 공정률 대비 집행률(B/A)이 1.00 이상(최소1.14, 최대 1.66)인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III-2〉 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현황 사례

| 현장 | 공사종류    | 관리자 배치     | 공정률(A) | 집행률(B) | B/A  |
|----|---------|------------|--------|--------|------|
| A  | 일반건설(갑) | 안전 3, 보건 1 | 79%    | 131%   | 1.66 |
| B  | 일반건설(갑) | 안전 3, 보건 1 | 67%    | 102%   | 1.52 |
| C  | 일반건설(갑) | 안전 4, 보건 1 | 42%    | 50%    | 1.19 |
| D  | 일반건설(갑) | 안전 6, 보건 1 | 46%    | 68%    | 1.48 |
| E  | 일반건설(갑) | 안전 6, 보건 1 | 73%    | 110%   | 1.51 |
| F  | 일반건설(갑) | 안전 8, 보건 1 | 57%    | 77%    | 1.35 |
| G  | 중건설     | 안전 3, 보건 1 | 81%    | 92%    | 1.14 |
| H  | 중건설     | 안전 6, 보건 1 | 97%    | 120%   | 1.24 |

8) 건축의 경우, 건설사마다 집행률 차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집행률 100%를 유지하는 건설사 일부 존재). 단, 토목은 모든 현장에서 초과 집행 중이며, 특히 도로공사는 노반, 교량, 터널 비중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 집행규모에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의견 수렴

또한 안전보건관리비 비목별 집행 비중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반적으로 ‘인건비 > 안전시설비 > 개인보호구’의 순으로 비용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일부 발주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표 Ⅲ-3과 같이 3개 항목(인건비, 시설비 및 보호구)이 전체 계상액의 90% 수준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3〉 사용항목별 집행 비중 조사 결과

(단위 : %)

| 비목                   | 완공 사업   |       | 진행 중 사업 |      |
|----------------------|---------|-------|---------|------|
|                      | 일반건설(갑) | 중건설   | 일반건설(갑) | 중건설  |
|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 49.9    | 40.23 | 56.8    | 49.5 |
| 2. 안전시설비 등           | 27.0    | 31.64 | 22.9    | 23.8 |
| 3. 보호구 등             | 12.0    | 17.19 | 9.6     | 16.4 |
| 4. 안전보건진단비 등         | 3.9     | 3.34  | 3.6     | 3.4  |
|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4.8     | 2.77  | 2.9     | 3.0  |
|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1.8     | 3.29  | 3.0     | 3.7  |
| 7. 기술지도비             | 0.2     | 0.37  | 0.6     | 0.0  |
|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인건비 등 | 0.1     | 1.15  | 0.5     | 0.1  |
| 9. 위험성 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 0.0     | 0.00  | 0.1     | 0.0  |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준공 시점 이전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는 모두 집행되는 실정이며, 따라서 현행 계상요율에 대한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상액 자체가 작고,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의 확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요율의 인상폭이 높아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 2) 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집행 사유

### (1) 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집행 원인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기준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는 전반적으로 초과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같은 상황을 야기하는 원인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집행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인건비의 상승과 사업별 공사기간의 차이라는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표 Ⅲ-4와 같다.

〈표 Ⅲ-4〉 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집행 주요 원인

| 구분   |             | 세부내용  |
|------|-------------|---|
| 인건비  | 인건비 상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확대 등 정책적 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 → 안전관리자 인건비 상승</li> </ul>   |
|      | 안전관리자 추가 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관리강화 정책에 따른 안전관리자(또는 안전패트롤 등) 추가 배치 ; 법정 기준 이상 배치</li> </ul>  |
|      | 보건관리자 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2015년 1월부터 시행 → 2015년 이전 계약한 공사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음에도 기존 요율 적용 (일반공사(갑) 기준 2015년 이전 1.97% → 이후 2.15%로 개정되었으나, 2015년 이전 공사는 1.97% 적용)</li> <li>즉, 보건관리자 인건비로 인한 초과집행 발생</li> </ul> |
| 공사기간 | 공기연장 발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허가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소모성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비용 추가 발생</li> </ul>  |
|      | 장기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공사 공기 2~4년, 토목공사 공기 5~10년 → 장기공사일수록 인건비 사용 비중 증가</li> <li>현 계상요율 체계에는 공사기간 고려 x</li> </ul>   |

인건비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등과 같은 정책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 및 추가 배치 등과 같은 이유로 초과 집행

하게 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또한 보건관리자 배치 기준 시행(2015년) 이전 계약된 공사의 경우, 보건관리자의 배치를 고려한 상향 요율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요율이 반영된 상태에서 보건관리자를 투입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비의 부족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사업마다 차이가 존재하는 공사기간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투입 기간과 연계되어 안전보건관리비의 초과 집행을 유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현행 규정에서는 장기간 지속되는 사업에 대한 공사기간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의 부재가 한계점이라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또한 인·허가 등에 따른 공기연장 발생 시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소모성 안전시설물 설치 등과 같은 비용은 지속적으로 투입된다는 체계 역시 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집행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검토되었다.

위의 사항 외에도 최근 개정된 고시에 규정된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 및 임대, 겸직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출장비 일부(50%) 인정, 위험성 평가 등에 따른 소요 비용 신설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비용을 계상할 수 있는 요율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2) 초과집행분 정산 방안 등

초과 집행된 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발주기관의 추가정산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초과 집행된 금액만큼 정산 요청을 하고 있으며, 추가정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윤, 간접비 등 원가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비의 추가정산 기준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조사되었으며, 실제 GH는 그림 III-1과 같이 2022년 5월 말부터 안전보건관리비 초과집행분(계약금액의 최대 160%)에 대해 정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 GH,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 조정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강화한다.

GH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수년째 동결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실제 원·하도급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시 계상금액의 최대 160%까지 추가정산이 가능토록 하는 내부 적용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관리 관련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비 구입, 안전보건 교육비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GH는 또 입찰 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안전계약특수조건에 삽입해 원도급 뿐만 아니라 하도급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충분히 확보되도록 했다.

전형수 GH 사장 직무대행(부사장)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 하는 등 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공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출처 : 아시아경제(2022년 4월 4일)

### [그림 III-1] GH 안전보건관리비 추가정산 관련 언론보도

### 3) 요율 분류체계 개선 필요성

현재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요율 분류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사종류 분류체계 개선, 사업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의 마련, 현행 공사규모 기준을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현장 기준으로 개선, 공사기간의 반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개선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종류 분류체계 개선

가)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구분

이해관계자들은 일반건설공사(갑)에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간 생산체계 차이 등을 고려하여 공사종류 분류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표 Ⅲ-5와 같다.

〈표 Ⅲ-5〉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생산체계 상 차이점

| 구분            | 세부내용  |
|---------------|---|
| 공사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공사는 정해진 공사지역 내 수직적으로 공사 수행 → 공사지역 (범위)가 명확하여 안전관리 활동이 비교적 용이</li> <li>• 토목공사는 선형구조물로서 여러 지역에 걸쳐 공사 수행 → 초기 공사 지역에 대한 용지 확보 문제, 예기치 못한 지장물 이설공사 등에 기인한 공기지연 시에도 안전관리자 인건비 등 지속 지급</li> <li>• 또한 토목공사는 공사범위가 넓고 세부공종 산발적으로 수행 → 동일규모라 할지라도 건축공사 대비 다수의 안전관리자 투입이 필요하여 인건비 부담 증가</li> </ul> |
| 안전시설물 설치 및 해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공사는 수직적이고 작업범위가 명확하여 안전시설물 설치 이후 해체까지 재설치 등의 반복작업 x</li> <li>• 토목공사는 선형구조물로서 작업범위가 매우 넓고 공사진척에 따라 작업현장이 지속적으로 이동 → 기 설치된 안전시설물의 해체·설치 하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 성토작업시 성토 높이 변경으로 기존 시설물 해체·재설치 반복 등</li> </ul> </li> </ul>    |
| 신호수 투입 규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장비 사용 시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업무 전담 신호수 배치 필요</li> <li>• 토목공사는 인력 중심 건축공사와 달리 중량물 운반 및 설치작업이 많이 다수의 기계장비 투입 → 현행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따른 비용으로 안전전담 신호수 인건비 사용 현실적 한계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는 신호수 인건비 미반영 또는 소수 인력만 반영 중</li> </ul> </li> </ul>        |

검토결과,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는 공종별 생산체계에 기인하여 공사범위, 안전시설물 설치 및 해체, 신호수 투입규모 등 측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사범위 측면에서 살펴보면, 건축공사는 사전 확보된 용지에서 정해진 공사지역 내 수직적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안전관리 범위가 명확하여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관리활동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다. 반면 토목공사는 선형구조물로서 초기 공사지역에 대한 용지 확보 업무가 필요하며 지장물 이설 공사 등에 따른 공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공사가 여러 지역에 걸쳐 수행되기 때문에 공사범위가 넓고 산발적으로 세부공종이 동시에 수행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공사종류 및 규모에 포함되어 안전보건 관리비가 계상되었을 경우, 건축공사 대비 다수의 안전관리자 투입 등이 요구되는 토목공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적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건축공사는 수직적이며 정적인 공사라는 특성 상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면 이후 해체까지 재설치 등의 반복 작업이 적다. 그러나 토목공사의 경우, 작업범위가 넓고 공사진척에 따라 작업현장이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기존 설치하였던 안전시설물을 해체·재설치하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에 다수의 장비가 투입<sup>9)</sup>되어 안전보건관리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셋째,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기계장비가 투입되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전담 신호수 배치가 필요하다. 건축공사는 전통적으로 인력 중심 생산체계를 가지고 있어 기계장비 투입 규모가 비교적 적으나, 토목공사는 중량물 운반 및 설치 작업에 다수의 기계장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현행 고시기준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로 신호수 인건비 등을

9) 예 : 1)장비 이동 및 작업을 위해 기존에 설치한 안전시설물 해체 및 재설치, 2)교량 하부 및 상부 구조물 공사에 따른 안전시설물 재설치, 3)성토작업시 초기 안전시설물 설치 이후 성토 높이 변경으로 기존 안전시설물 해체 및 재설치 등

집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 인터뷰 결과, 안전보건관리비로서 안전전담 신호수의 인건비는 미반영하거나 소수의 인력을 대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공사종류 개선방향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종별 생산체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공사종류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표 Ⅲ-6과 같다.

〈표 Ⅲ-6〉 공사종류 재분류 필요 사례

| 구분           | 세부내용  | 공종 개선방향                     |
|--------------|---|-----------------------------|
| 고속도로<br>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형공사로서 공사가 이동하면서 진행되므로 안전 시설물 투자비용이 타 공사보다 高</li> <li>5년 이상의 장기공사로 일반건축물 대비 안전보건 관리비 집행금액 규모 大</li> </ul>                            | 일반건설공사(갑)<br>↓<br>중건설공사     |
| 택지조성<br>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적으로 택지조성 공사는 도로공사, 포장공사, 우수관/상수관 부설공사, 구조물공사 등 복합공종으로 진행<br/>                         → 일반건설공사(갑) 수준의 안전보건 관리비 효율 적용 필요</li> </ul> | 특수 및 기타공사<br>↓<br>일반건설공사(갑) |
| 원자력발전소<br>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자력발전소 공사는 복합공종이나 현재 일반건설 공사(갑)으로 분류<br/>                         → 현행 분류보다는 중건설공사의 성격이 크므로 공종 개선 필요</li> </ul>                      | 일반건설공사(갑)<br>↓<br>중건설공사     |

예를 들어 현재 특수 및 기타공사로 분류되어 있는 택지조성공사의 경우, 기본적인 토공사 외 도로공사, 포장공사, 우수관·상수관 부설공사, 구조물 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건설공사(갑)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사업별 고유 특성 반영

이해관계자들은 현행 기준의 개선방안 중 하나로 각 사업별로 존재하는 안전 관리 난이도 차이 등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Ⅲ-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Ⅲ-7〉 사업별 고유 특성 사례

| 구분   |                 | 세부내용  |
|------|-----------------|---|
| 건축공사 | 공사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심지 공사 시 인접 건물 및 보행자 안전, 도로 통제 등을 위한 추가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li> </ul>                  |
| 도로공사 | 지장물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 매립된 상하수도, 철탑과 같은 지장물 존재 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신호수 배치 등을 위한 추가 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발생</li> </ul> |
|      | 신설 및 확장공사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확장공사의 경우, 기존 도로 교통통제 등 위험요소 다수 존재</li> </ul>                                     |
|      | JCT, IC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JCT와 IC 존재 시, 연결 도로의 교통통제 등 위험요소 다수 존재</li> </ul>                                |
|      | 공사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심지 공사 시 야간작업, 도로통제로 인한 위험도 증가</li> </ul>  |
| 철도공사 | 신설 및 개량공사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량공사는 야간에만 진행된다는 특성 상 주간공사 대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소요비용 大</li> </ul>                    |
|      | 고압선, 활선작업 존재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위험 공종인 고압선/활선작업 수행 시 다수의 위험요소 존재</li> </ul>                                     |

즉,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각 사업별로 존재하는 공사지역, 작업위험성 등 차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 (3) 공사규모 개선 필요성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개 공사규모(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보건관리자 배치) 분류기준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23년까지 확대될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고려한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실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의 기준은 기존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2020년 7월 1일), 80억원 이상(2021년 7월 1일), 60억원 이상(2022년 7월 1일), 50억원 이상(2023년 7월 1일)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0억원 이상까지 확대될 시 안전관리자 인건비 등을 미집행하고 있던 건설 사업장들은 현행 기준으로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초과집행 규모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행 공사규모를 50억원 미만 및 50억원 이상 등으로 구분하는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행 고시에서 보건관리자의 배치 기준은 건축 800억원(토목 1,00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모 미만 사업에서는 안전관리자가 보건관리자의 업무까지 병행하여 업무부담도가 높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따라서 보건관리자의 배치기준을 현재보다 하향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공사기간의 반영

현행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은 공사종류 및 규모를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공사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를 비교하여 보면, 건축공사는 사업 완료까지 일반적으로 2년~3년의 기간이 소요되나, 토목공사는 6년 이상 장기간 동안 수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up>10)</sup>. 이와 같은 특성 상 현행 기준에서 동일 공사종류 및 규모에 포함되어 같은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된 사업<sup>11)</sup>이라 할

지라도 건축공사 대비 토목공사의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규모는 적을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장기간 투입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등에 대한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실태조사 운영 시 공사기간 관련 데이터를 함께 수집하여 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과의 영향관계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기타

##### (1) 하도급사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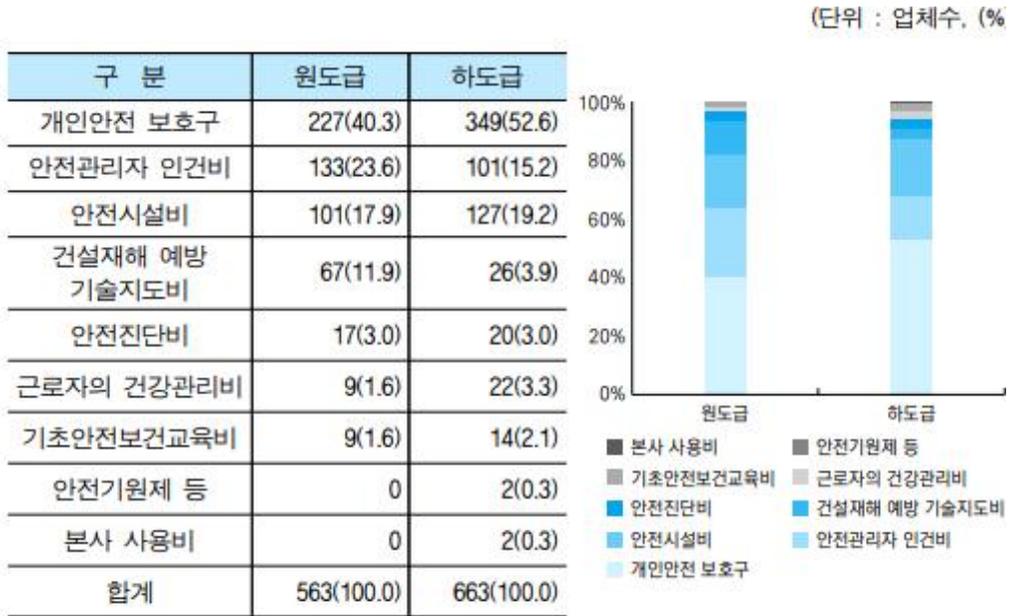
현행 안전보건관리비는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한 계상 및 집행 근거가 없어 원도급사 위주로 계상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체계에 따라 하도급사의 안전보건관리비는 원도급사의 내규에서 공종 중요도 등에 따라 별도로 규정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건설협회 소속의 실무자 인터뷰 결과,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중 인건비 및 안전시설비는 원도급사 위주로 집행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지만,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하도급사 소속이므로 이들에게 지급하는 개인 보호구 및 안전전담 신호수 인건비 등은 하도급사에서 상당 부분 집행되어 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실례로 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그림 III-2와 같이 하도급사의 안전보건관리비는 개인보호구 구입 등에 50% 이상 집행되고 있으며, 인건비 및 안전시설비 등에도 일정 부분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도로공사의 경우 6년~7년, 상하수도 공사의 경우 5년 이상, 단지조성 공사(상하수도 설치를 위한 단지조성 공사)의 경우 8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보통 1년 정도의 공기연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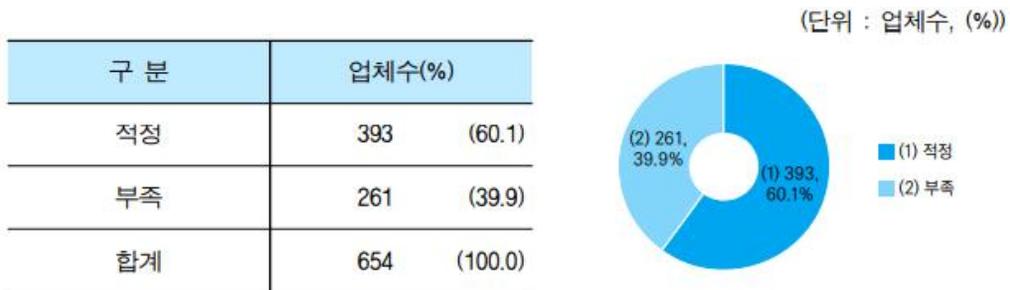
11) 예 : 동일한 대상액을 기준으로 일반건설공사(갑)에 포함되어 같은 요율이 적용되는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등



\* 출처 :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21)

[그림 Ⅲ-2] 하도급사 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현황 분석 결과

또한 지급받는 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그림 Ⅲ-3과 같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약 40% 수준으로 조사되어 충분한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비용 확보가 어려운 현실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 출처 :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21)

[그림 Ⅲ-3] 하도급사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정성 분석 결과

원도급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미인정하여 지급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 그림 Ⅲ-4와 같이 약 84% 수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현장일수록 이와 같은 사례는 더 많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와 같이 안전보건관리비의 부족 또는 미인정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은 발주기관에서 계상하는 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자체가 낮고, 이에 따라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비용을 적게 계상하여 주는데 기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업체수, (%))

| 구분  | 대규모        | 중규모         | 소규모         | 정보없음       | 전체          |
|-----|------------|-------------|-------------|------------|-------------|
| 있다  | 19 (24.7)  | 29 (12.7)   | 32 (14.6)   | 15 (20.0)  | 95 (15.9)   |
| 없다  | 58 (75.3)  | 199 (87.3)  | 187 (85.4)  | 60 (80.0)  | 504 (84.1)  |
| 합 계 | 77 (100.0) | 228 (100.0) | 219 (100.0) | 75 (100.0) | 599 (100.0) |

\* 출처 :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21)

#### [그림 Ⅲ-4] 원도급자의 안전보건관리비 미인정 사례 조사 결과

위와 같은 문제들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및 그 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원·하도급간 협의조정 및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만 정하고 있을 뿐 수급인간 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에 기인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단, 하도급사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 중소기업 소속 이해관계자들은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하도급사 인력 부족 등에 따라 현행 체계가 적합하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하도급사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의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고시 반영 여부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연간단가계약공사의 계상 체계 개선

이해관계자 인터뷰 결과, 전문공사의 연간단가계약공사 또한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현행 고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간단가계약으로 진행되는 공공공사의 경우, 1년간 예상되는 잠정물량을 유추한 후 공사원가계산에 따라 총액계약으로 운영된다. 여기서 총액계약의 공사 규모는 2천만원 이상이므로 공사원가계산 시 당연히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있으며, 실제 공사 수행을 통해 잠정물량에 대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발생하는 공사는 규모가 2천만원 미만으로 수행되는 사례가 상당수이므로 연간단가에 의한 계약수행방식에 있어 정산시 안전보건관리비를 미계상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연간단가는 전문공사(상·하수도, 도로 포장 등),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에서 유지보수 차원의 소규모 사업들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현행 고시에서는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에 한정하여 단가계약에 대해 총계약금액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소홀을 우려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소규모 공사도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와 같이 연간단가계약이 체결되는 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계약금액으로 정산하는 방침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sup>12)</sup>. 이는 현행 고시에 있어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이 발주자의 최소의무 규정이므로, 발주자의 재량에 따라 적용 대상 범위 확대가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 따라 수립된 발주자의 자구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발주자가 서울시와 같이 자구적인 대책의 수립은 불가능하므로 보다 강력한 권고 사항이 필요하며, 따라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이를 수용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2)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방침 제40호(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제고 방안, 2022.2.25)

### (3) 안전관리자 등급별 배치 기준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안전관리자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 규모가 작은 현장일지라도 고임금의 경력이 높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현황에 기인하여 안전보건관리비의 부족이 발생된다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실제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경력에 비례하여 최대 2~3배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의 인건비 집행 비중 과다 및 타 비목 집행비용 부족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의 경력이 고려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을 마련하는 동시에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2항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건설공사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을 벤치마킹하여 안전관리자 등급 및 공사규모별 안전관리자 투입 배치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3)</sup>.

### (4) 기타

기타 의견으로서, 이해관계자들은 현행 고시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삭제, 대상액 산정기준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시 별표 3은 권고사항이기는 하나,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발주기관, 감리자 등은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상액 산정 기준의 경우, 관급자재비 또는 완제품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의 1.2배 초과시 작은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인 안전보건관리비 확보 측면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13) 예 : (1,000억원 이상) 고급기술자 1인 이상, (300억원 이상) 중급기술자 1인 이상, (300억원 미만) 초급기술자 1인 이상

### 3. 시사점

이해관계자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수 있는 현행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요율은 「중대 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의 확대, 최근 고시 개정으로 사용항목 확대 등과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현실적인 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및 건설업 안전수준 제고 등을 위해서는 현행 계상요율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이해관계자들은 현행 공사종류 분류체계에 있어 공종별 작업 특성 및 사업별로 존재하는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의견을 기초로 할 때, 현행 공종 분류체계를 건축, 토목, 산업설비 등으로 분류하고, 사업의 안전관리 난이도가 높거나 고위험 공종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할증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또는 공종 분류체계 재편과 동시에 현행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상향 등과 같은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공사규모 분류체계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확대될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기초로 하는 동시에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대상을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기초로 공사규모를 개선하는 것은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며,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하향에 대해서는 향후 실태조사 분석결과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으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동일한 공사종류 및 규모에 포함되어 같은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된 사업들이라 할지라도 장기간 동안 수행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단기간 공사 대비 보다 높은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기간에 따른 추가적인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는 할증 방안 마련 또는 현행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의 상향 등과 같은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하도급사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상충되었으며, 따라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과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문회의를 통해 해당 기준의 마련 필요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연간단가계약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의 개선(고시 제3조 삭제 등), 안전관리자 등급별 배치 기준 마련 등에 대해서도 전문화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여부 필요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들이 기타 의견의 일환으로 제시한 고시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 삭제, 대상액 기준 변경 등과 관련해서는 실태 조사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과의 협의과정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IV.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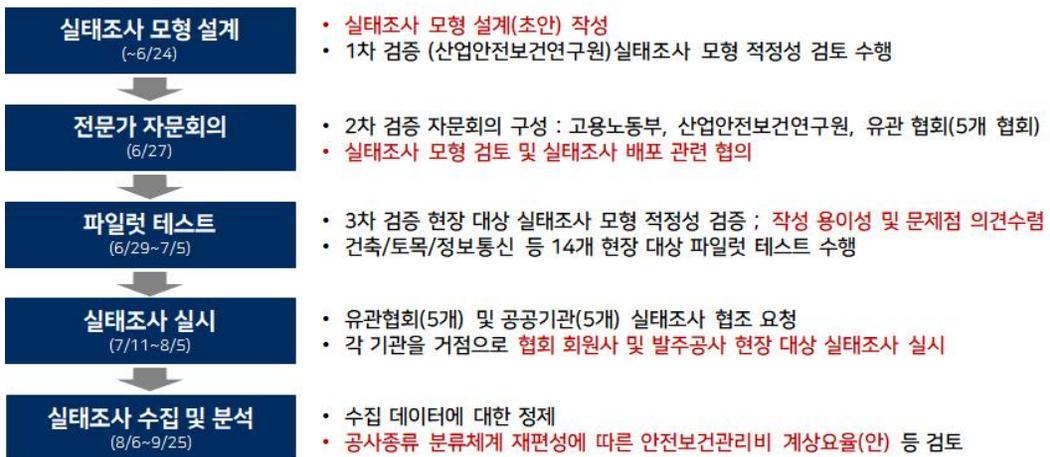


## IV.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태조사

### 1. 개요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장별 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현행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자 등의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장별 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인식에 대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그림 IV-1과 같이 ①실태조사 모형설계, ②전문가 자문회의, ③파일럿 테스트, ④실태조사 실시, ⑤실태조사 수집 및 분석 순으로 실태조사를 계획하였다.

실태조사 모형은 안전보건관리비 집행 현황과 계상기준에 대한 실무자 의견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2차례에 걸친 검증과정(전문가 자문회의 및 파일럿 테스트)을 통해 실태조사 모형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그림 IV-1] 실태조사 수행 절차

실태조사에 대한 건설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유관 협회와 공공기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각 협회 회원사와 발주공사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약 3주간의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 2. 실태조사 모형 설계

실태조사는 현장별 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종류별 적정 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산정 및 계상기준 개선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실태조사 모형은 공사종류 및 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 수집과 계상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가능한 형태로 표 IV-1과 같이 크게 ①일반개요, ②공사종류, ③공사비정보, ④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 ⑤인식조사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 1) 일반개요

일반개요는 작성자 정보, 건설사명, 현장명, 공사기간, 공정률, 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요율 및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수 등의 항목을 포함하며 해당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공사특성 및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이해관계자 인터뷰 내용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수를 법적 선임 수와 실제 현장 투입수를 구분하였으며, 공사기간의 경우 해당 현장의 공사기간과 동일공종의 평균 공사기간을 구분하였다. 또한 안전보건관리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특성 요인을 아래와 같이 전문가 자문회의 및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도출하고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가능토록 설계하였다.

〈표 IV-1〉 안전보건관리비 실태조사 모형 구성

| 구분                  | 입력 정보                                    | 비고                     |
|---------------------|--|------------------------|
| 1. 일반개요             | 작성자 정보(성명/직급/연락처)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문의         |
|                     | 건설사명(원도급)                                |                        |
|                     | 현장명                                      |                        |
|                     | 총공사비 및 최고층수                              | 공사특성 및 진행사항 파악         |
|                     | 공사특성(카테고리 선택)                            |                        |
|                     | 공사기간(착공일, 준공예정일, 공기연장기간, 동일공종 평균 공사기간 등) |                        |
|                     | 안전보건관리비 적용 공사종류, 적용 요율                   |                        |
|                     | 공정률                                      |                        |
|                     | 안전보건관리비 집행률(현시점)                         |                        |
|                     |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수(법령기준, 실투입)                  |                        |
| 2. 공사종류             | 공사종류(카테고리 선택)                            | 공사종류 파악                |
| 3. 공사비              |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및 적용 요율 산정 |
|                     | 총공사비                                     |                        |
|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                        |
| 4. 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     | 시설물별 공사비 정보(터널, 교량, 도로, 궤도 등)            |                        |
|                     | 사용항목별 실적행 내역(항목별 총액기준)                   |                        |
|                     | 사용항목별 집행예정 내역(항목별 총액기준)                  |                        |
| 5. 인식조사             | 안전보건관리비 미처리 내역                           | 안전보건관리비 인식 조사          |
|                     | 현행 안전보건관리비 금액 적정성 여부(5점 척도)              |                        |
|                     | 공사종류 재분류 필요성 여부(5점 척도)                   |                        |
|                     | 사용항목 중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부족한 항목                |                        |
|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개선 필요성               |                        |
| 대상액 관련 계상기준 개선의 필요성 |  |                        |

## 2) 공사종류

공사종류는 해당 현장의 공사종류를 파악하고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라 기존 고시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를 재분류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제시된 세부공종을 참고하여 표 IV-2와 같

이 크게 건축분야, 토목분야, 산업환경분야, 조경분야, 기타분야로 구분하였으며 현장별 적합한 세부공종을 선택하도록 설계하였다.

〈표 IV-2〉 안전보건관리비 실태조사 모형 - 공사종류 선택항목

| 구분     | 세부공종  |
|--------|---|
| 건축분야   |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사무실겸용 건물, 상가·백화점·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 호텔·숙박시설, 관공서건물,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물,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운동장, 전시시설 등 관람집회시설, 창고, 차고, 일반공장, 작업장용 건물, 터미널건물, 기계기구시설(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기타 건축공사, 건축분야 전문공사 공종 |
| 토목분야   |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교량(도로/철도), 교량(기타), 댐, 간척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터널(도로/철도), 터널(기타), 일반철도/궤도, 고속철도/궤도, 지하철,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상·하수도, 정수장, 관개수로, 농지정리, 매립공사, 택지조성, 공업용지 조성, 기타 토목공사, 토목분야 전문공사 공종   |
| 산업환경분야 |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플랜트설치공사, 쓰레기소각장설치공사,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송유관, 가스관, 유류저장시설, 가스저장시설, 기타 산업·환경설비공사   |
| 조경분야   | 수목원, 공원 조성공사, 기타 조경공사   |
| 기타분야   | 전기분야 시설, 정보통신분야 시설, 소방분야 시설, 건축설비공사, 공작물해체·철거공사, 기타   |

### 3) 공사비 및 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

공사비와 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은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적정성 검토 및 공사종류별 적용 요율 산정을 위한 것으로 공사비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도급금액, 관급자재비 등 세분화하여 작성토록 하였다. 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의 경우, 현재까지 안전보건관리비 집행한 내역과 준공시점까지 예상되는 집행내역, 그리고 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초과집행 우려로 집행하지 못한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토록 항목을 구성하였다.

특히 집행된 내역 외 예상 집행 내역과 초과집행 우려로 집행하지 못한 내역의 경우, 무분별한 작성에 따른 데이터 신뢰성 저하를 고려하여 표 IV-3과 같이 인건비, 안전시설물비, 개인보호구비에 한하여 세부내역을 작성하도록 항목을 구성하였다.

〈표 IV-3〉 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 조사 항목별 작성방법

| 구분         |       | 현재까지 실집행 내역 | 현재부터 준공까지의 예상 집행내역  | 초과집행으로 계상하지 못한 내역   |
|------------|-------|-------------|---|---|
| 1.인건비      | 안전관리자 | 총액 기입       | 인력별 구분 기입<br>(안전관리자 A,B,C 등 구별)                                       | 총액 기입   |
|            | 보건관리자 | 총액 기입       | 인력별 구분 기입<br>(보건관리자 A,B,C 등 구별)                                       | 총액 기입   |
|            | 신호수 등 | 총액 기입       | 총액 기입   | 총액 기입   |
| 2.안전시설물    |       | 총액 기입       | 세부항목별 구분 기입<br>-추락방지용 안전설비<br>-낙하비래용 보호용설비<br>-각종 안전표지<br>-근로자 보호시설 등 | 세부항목별 구분 기입<br>-추락방지용 안전설비<br>-낙하비래용 보호용설비<br>-각종 안전표지<br>-근로자 보호시설 등 |
| 3.개인보호구    |       | 총액 기입       | 세부항목별 구분 기입<br>-안전모, 안전대, 안전화<br>-안전관리자 업무용 기기 등                      | 세부항목별 구분 기입<br>-안전모, 안전대, 안전화<br>-안전관리자 업무용 기기 등                      |
| 4.안전진단비    |       | 총액 기입       | 총액 기입   | 그 외 항목<br>임의 작성   |
| 5.교육비      |       | 총액 기입       | 총액 기입   |   |
| 6.건강관리비    |       | 총액 기입       | 총액 기입   |   |
| 7.기술지도비    |       | 총액 기입       | 총액 기입   |   |
| 8.본사 사용비   |       | 총액 기입       | 총액 기입   |   |
| 9.위험성평가 비용 |       | 총액 기입       | 총액 기입   |   |

#### 4) 인식조사

인식조사는 현행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대한 현장 실무자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5가지 문항(①현행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액 규모의 적정성, ②공사종류 분류기준의 개선 필요성, ③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중 집행에 부족한 항목, ④공사진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개선의 필요성, ⑤관급자재비 및 완제품 존재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선의 필요성)으로 구성했다.

또한 실태조사 작성에 대한 신뢰성을 교차검증하는 방법으로 공사비 총액 및 공사원가 구성상 직접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간접비(현장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관급자재비 등을 항목별로 작성토록하여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비를 유추하고 작성된 안전관리비 계상액과 대비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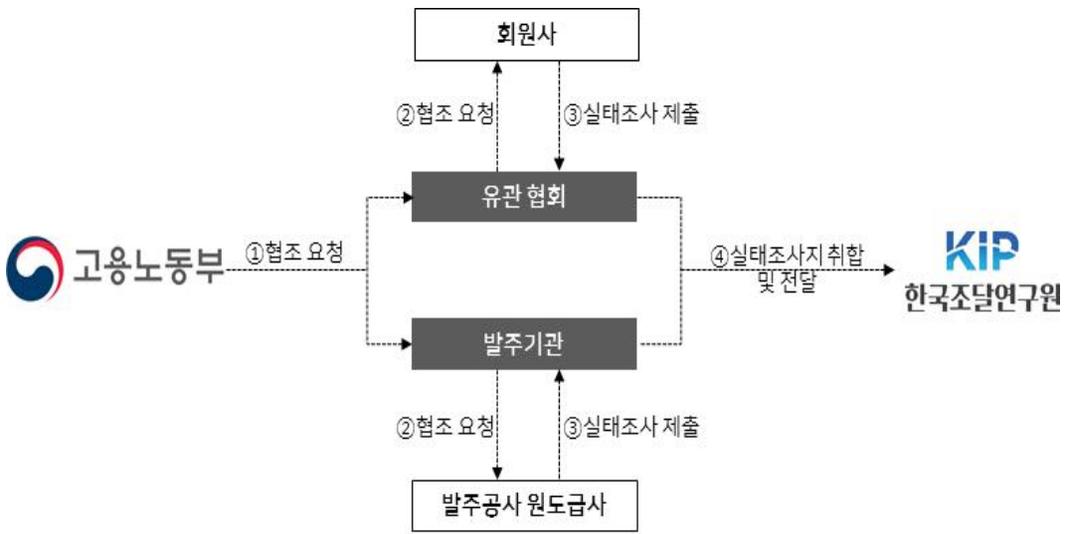
### 3. 실태조사 수집 방안

#### 1) 실태조사 협조체계 구축

성공적인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각 현장별 실무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다양한 공사종류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실태조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국내 건설공사 유관 협회 및 발주기관은 매우 다양하나 보유 회원사 및 발주량,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 실태조사 협조요청이 필요한 기관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로 한정지을 수 있다.

이에 그림 IV-2와 같이 상기의 5개 유관 협회 및 5개 발주기관과 연구진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각 협회 및 기관을 거점으로 협회 회원사와 발주공사 원도급사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 방안을 수립했다.



[그림 IV-2] 유관 협회 및 발주기관 실태조사 협조체계 및 수집방안

## 2) 실태조사 가능 범위 검토

이 연구의 조사 대상 건설공사는 현행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상의 공사 종류인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 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 공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태조사는 위 모든 공사 종류에 대해 수집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하는 바, 전술한 10개의 협조요청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가능범위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였다.

기관별 실무자 인터뷰를 통한 실태조사 가능범위 검토 결과는 표 IV-4와 같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모든 공사종류에 대해 실태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그 외 기관의 경우 주요 발주공사 및 회원사 구성

특성에 따라 일부 공사종류에 한정하여 실태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문건설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전기공사협회, 건설안전지도기관 대표자협회의 경우 50억원 미만의 현장이 다수를 차지하므로 소규모 공사현장 또한 안전보건관리비 실태조사 수집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IV-4〉 협조요청 기관별 조사가능 범위

| 구분     | 협조요청기관             | 조사대상                       | 공사종류 분류기준 |   |     |          |          |
|--------|--------------------|----------------------------|-----------|---|-----|----------|----------|
|        |                    |                            | 갑         | 을 | 중건설 | 철도<br>궤도 | 특수<br>기타 |
| 종합건설공사 | 대한건설협회             | 협회 회원사                     | ●         | ● | ●   | ●        | ●        |
| 전문건설공사 | 대한전문건설협회           |                            | ●         | ● | ●   | ●        | ●        |
| 기타공사   | 정보통신공사협회<br>전기공사협회 |                            | ●         |   |     |          | ●        |
| 발주기관   | 한국도로공사             | 해당 기관<br>발주공사 대상           | ●         |   | ●   |          |          |
|        | 한국토지주택공사           |                            | ●         | ● |     |          | ●        |
|        | 한국수자원공사            |                            | ●         |   | ●   |          |          |
|        | 국가철도공단             |                            |           |   | ●   | ●        |          |
| 소규모 공사 | 건설안전지도기관<br>대표자 협회 | 협회 회원사<br>(안전관리자 선임 제외 현장) | ●         | ● |     |          |          |

#### 4. 파일럿 테스트를 통한 실태조사 모형 검증

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공사비 및 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 작성의 용이성, 인식조사 설문항목의 적정성, 공사종류 및 공사특성 항목의 적정성 등 실태조사 모형의 구조적 결함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 파일

릿 테스트를 수행했다.

파일럿 테스트는 상기의 유관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모형을 배포하고 조사항목에 대한 작성자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협회별 회원사의 주요 공사분야 및 공사규모를 고려하여 표 IV-5와 같이 파일럿 테스트 요청 현장을 특정하였으며 총 16개소 현장에 대한 자료수집 및 의견수렴을 수행했다.

〈표 IV-5〉 협회별 파일럿 테스트 요청 및 수집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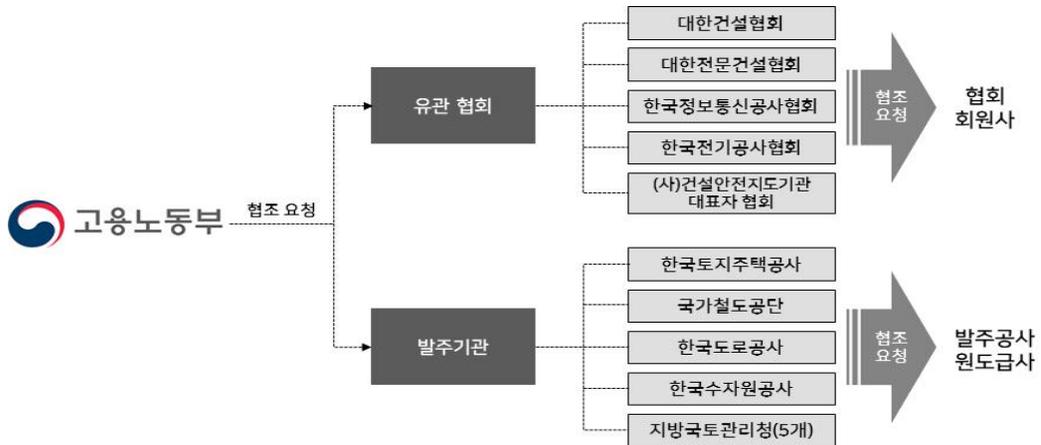
| 구조                 | 조사요청 현장  | 수집  |
|--------------------|--|-----|
| 대한건설협회             | 건축/산업환경분야 대상 50~100억 미만 / 100~500억 미만 / 500억 이상<br>(각 2부씩, 총 6부) | 5부  |
| 대한전문건설협회           | 건축/토목/산업환경분야 대상 5억 미만 현장 (총 6부)                                  | 5부  |
| 정보통신공사협회           | 5억 미만 / 20~30억 현장 (총 2부)   | 2부  |
| 전기공사협회             | 5~10억 현장 (총 2부)  | -   |
| 건설안전지도기관<br>대표자 협회 | 10~20억 미만 / 20~50억 미만 현장 (총 4부)                                  | 4부  |
| 계                  |  | 16부 |

파일럿 테스트 결과, 일부 항목에 대해 실태조사 작성에 대한 어려움은 존재하나, 불명확한 명칭으로 작성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공사비 및 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 항목 분류의 오류 등 모형에 대한 결함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실태조사 작성 시의 어려움으로 가장 많은 의견은 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 작성에 대한 것으로 인건비, 안전시설물비, 개인보호구비 등 비목 단위의 금액 작성은 가능하나 세부항목별(예, 개인보호구 - 안전모, 안전화 등) 작성할 경우 과도한 업무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소규모공사 현장일수록 전담 안전관리자가 부재하고 안전관리수준이 낮아 해당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작성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바, 50억원 미만의 현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을 세부항목 단위가 아닌 9개 비목 단위로 간소화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된다.

## 5.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는 2022년 7월 11일부터 8월 5일까지 약 3주간 실시되었다. 현재 유관 협회 및 발주기관을 거점으로 하여 그림 IV-3와 같이 협회 회원사와 발주공사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림 IV-3] 협조요청 기관별 실태조사 배포 방식

그 결과 총 1,579부 조사지를 수집하였으며 이중 1차 전처리로 데이터에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액 및 집행액, 사용 항목별 안전보건관리비, 공무원가 구

성 등 주요 내용 중 일부 누락된 데이터(258부)를 제거하였으며 2차 전처리로 공정을 50% 미만이거나 안전관리비 집행율이 50% 미만, 안전관리자 배치 현장에 인건비 항목에 금액이 누락된 경우, 공사원가계산서상 유추한 안전보건관리비가 총 공사금액 대비하여 유효 범위내<sup>14)</sup>(총공사금액 대비 0.8~2.0%) 들어오지 못한 경우, 작성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대비 유추한 안전보건관리비 오차가 큰 경우 등을 고려하여 336부를 제거하였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통해 985부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6〉 실태조사 전처리과정

| 총부수   | 1차 전처리                                | 2차 전처리  | 분석대상 |
|-------|---------------------------------------|---|------|
| 1,579 | 258부<br>-. 미작성 조사지<br>-. 저화질 PDF 입력불가 | 336부<br>-. 공정율, 집행율 50% 미만<br>-. 안전관리자 배치현장 인건비 미입력<br>-. 계상금액 대비 총공사 금액 비율이 유효범위 밖 데이터 | 985부 |

14) 총 공사금액 대비 안전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건축공사의 경우, 1.2~1.6%, 토목공사의 경우 1.0~1.4% 정도 비중을 차지하므로 공사원가구성 내용을 토대로 상 예상되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유추하여  $\pm 20\%$  범위(0.8~2.0)에 들어오는 데이터만 유효 데이터로 인정하였다. 또한 작성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액과 교차검증을 실시하였다.



## V. 실태조사 분석 및 결과





## V. 실태조사 분석 및 결과

### 1. 실태조사 분석 대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처리 과정을 통해 도출된 총 985부에 대한 공사 종류별 및 금액구간별, 공사기간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V-1〉 분석 데이터 개요

| 구분        |             | 일반(갑) | 일반(을) | 중건설 | 철도·궤도 | 특수·기타 |
|-----------|-------------|-------|-------|-----|-------|-------|
| 금액<br>구간별 | 5억원 미만      | 77    | 11    | -   | 5     | 34    |
|           | 5억원~50억원 미만 | 170   | 3     | -   | 5     | 58    |
|           | 50억원 이상     | 445   | 12    | 33  | 41    | 91    |
| 공사<br>기간별 | 36개월 미만     | 488   | 21    | -   | 25    | 123   |
|           | 36개월 이상     | 204   | 5     | 33  | 26    | 62    |

985부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고시 기준 안전보건관리비 공사종류, 시설물 유형, 공사기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안전보건관리비 집행금액, 향후 집행 금액, 사용 항목별 집행 금액, 공사 원가계산서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으며 상단 필터링 작업을 통해 집단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 No   | 공사업           | 표준사업          | 인건비(인건비/총공사량) | 시공비(총공사량)       | 총공사량 | 공사업비 | 시공비(인건비/총공사량) | 인건비(인건비/총공사량) | 공사업비(인건비/총공사량) | 인건비(인건비/총공사량) | 총공사량         | 인건비(인건비/총공사량) | 공사업비(인건비/총공사량) | 인건비(인건비/총공사량) | 총공사량    |       |
|------|---------------|---------------|---------------|-----------------|------|------|---------------|---------------|----------------|---------------|--------------|---------------|----------------|---------------|---------|-------|
| 1194 | 정수유출차수리용      | 정수유출차수리용      | 1             | 22,550,000.00   | 12   | 1    | 0             | 100%          | 0%             | 99%           | 315,678.00   | 330,348.02    | 330,348.02     | 104.00%       | 10.5%   |       |
| 919  | 토사처리/인양토      | 토사처리/인양토      | 1             | 80,198,700.00   | 44   | 0    | 14            | 68%           | 32%            | 51%           | 1,377,402.55 | 533,882.26    | 1,260,494.44   | 1,615,616.75  | 135.10% | 13.6% |
| 1191 | 시공비(인건비/총공사량) | 시공비(인건비/총공사량) | 1             | 16,914,165.80   | 33   | 3    | 12            | 64%           | 36%            | 68%           | 3,239,381.50 | 2,645,425.70  | 642,650.00     | 2,686,262.70  | 99.71%  | 24.5% |
| 1192 | 인양토/인양토       | 인양토/인양토       | 1             | 17,951,520.00   | 33   | 0    | 7             | 78%           | 21%            | 65%           | 3,223,655.70 | 2,706,963.93  | 444,797.31     | 2,377,766.64  | 100.44% | 21.5% |
| 924  | 시공비(인건비/총공사량) | 시공비(인건비/총공사량) | 1             | 52,900,871.5    | 32   | 0    | 0             | 100%          | 0%             | 98%           | 1,646,545.91 | 1,646,540.00  | 100.00%        | 1,646,540.00  | 100.00% | 27.4% |
| 916  | 유출차수리/인양토     | 유출차수리/인양토     | 1             | 147,475,180.00  | 33   | 0    | 0             | 100%          | 0%             | 98%           | 2,719,498.21 | 2,719,480.00  | 100.00%        | 2,719,480.00  | 100.00% | 32.4% |
| 913  | 인양토/인양토       | 인양토/인양토       | 1             | 58,719,870.00   | 29   | 30   | 2             | 93%           | 7%             | 99%           | 802,852.19   | 1,326,451.00  | 1,326,451.00   | 1,653,991.12  | 123%    | 12.5% |
| 1194 | 인양토/인양토       | 인양토/인양토       | 1             | 81,622,530.00   | 29   | 2    | 10            | 68%           | 32%            | 64%           | 1,760,562.29 | 1,157,352.21  | 1,760,562.29   | 2,697,391.50  | 164.63% | 25.2% |
| 0    | 정수유출차수리용      | 정수유출차수리용      | 1             | 188,689,932.00  | 15   | 12   | 17            | 65%           | 35%            | 61%           | 2,802,448.57 | 2,597,262.04  | 702,622.10     | 2,299,882.14  | 119.68% | 57.9% |
| 910  | 유출차수리/인양토     | 유출차수리/인양토     | 1             | 169,934,473.00  | 33   | 0    | 0             | 100%          | 0%             | 91%           | 1,929,120.07 | 1,929,110.00  | 100.00%        | 1,929,110.00  | 100.00% | 36.6% |
| 916  | 유출차수리/인양토     | 유출차수리/인양토     | 1             | 821,198,900.00  | 34   | 3    | 2             | 94%           | 6%             | 95%           | 4,758,888.80 | 4,831,228.67  | 6,684,626.73   | 4,891,623.51  | 164.89% | 47.1% |
| 1193 | 인양토/인양토       | 인양토/인양토       | 1             | 171,091,927.00  | 31   | 3    | 0             | 100%          | 0%             | 98%           | 3,268,162.00 | 2,486,852.99  | 100.00%        | 2,486,852.99  | 92.23%  | 22.5% |
| 906  | 시공비(인건비/총공사량) | 시공비(인건비/총공사량) | 1             | 70,299,834.709  | 26   | 0    | 3             | 88%           | 12%            | 98%           | 996,188.24   | 1,021,165.64  | 614,562.26     | 1,677,668.63  | 164.28% | 18.1% |
| 909  | 유출차수리/인양토     | 유출차수리/인양토     | 1             | 78,028,000.00   | 36   | 0    | 10            | 71%           | 29%            | 92%           | 1,071,495.16 | 1,071,390.00  | 100.00%        | 1,071,390.00  | 100.00% | 37.6% |
| 1193 | 인양토/인양토       | 인양토/인양토       | 1             | 95,333,320.42   | 34   | 3    | 0             | 100%          | 0%             | 99%           | 2,111,931.70 | 2,180,000.00  | 100.00%        | 1,932,254.16  | 92.25%  | 24.2% |
| 1194 | 인양토/인양토       | 인양토/인양토       | 1             | 82,094,000.00   | 30   | 0    | 9             | 70%           | 30%            | 67%           | 1,116,739.60 | 1,196,333.82  | 1,196,333.82   | 1,196,333.82  | 107.15% | 23.6% |
| 1194 | 시공비(인건비/총공사량) | 시공비(인건비/총공사량) | 1             | 39,883,070.95   | 24   | 2    | 4             | 81%           | 17%            | 66%           | 840,442.99   | 630,520.63    | 334,489.66     | 950,502.61    | 116.60% | 27.1% |
| 715  | 정수유출차수리용      | 정수유출차수리용      | 1             | 136,523,677.56  | 33   | 1    | 2             | 94%           | 6%             | 95%           | 2,341,398.93 | 2,341,624.16  | 2,341,624.16   | 2,341,624.16  | 100.00% | 19.0% |
| 719  | 유출차수리/인양토     | 유출차수리/인양토     | 1             | 91,789,643.87   | 24   | 0    | 6             | 73%           | 27%            | 67%           | 1,391,124.69 | 1,521,324.69  | 1,657,751.14   | 1,657,751.14  | 122.71% | 38.4% |
| 1195 | 인양토/인양토       | 인양토/인양토       | 1             | 78,483,000.00   | 27   | 1    | 6             | 76%           | 24%            | 70%           | 1,195,943.00 | 1,015,833.70  | 1,194,000.00   | 1,194,000.00  | 100.00% | 23.5% |
| 1195 | 정수유출차수리용      | 정수유출차수리용      | 1             | 107,020,973.200 | 36   | 2    | 5             | 88%           | 14%            | 91%           | 1,511,282.53 | 1,199,462.32  | 391,340.00     | 1,930,831.02  | 162.59% | 33.6% |
| 1192 | 인양토/인양토       | 인양토/인양토       | 1             | 139,448,919.000 | 33   | 0    | 2             | 94%           | 6%             | 99%           | 2,973,244.81 | 2,842,520.00  | 2,842,520.00   | 2,842,520.00  | 97.11%  | 32.2% |
| 1192 | 정수유출차수리용      | 정수유출차수리용      | 1             | 58,020,402.949  | 31   | 0    | 2             | 94%           | 6%             | 98%           | 1,438,688.06 | 997,542.49    | 4,700,000      | 1,098,242.49  | 80.45%  | 21.4% |
| 919  | 다수유출차수리용      | 다수유출차수리용      | 1             | 71,321,500.000  | 38   | 0    | 0             | 100%          | 0%             | 98%           | 3,289,453.38 | 2,417,688.97  | 2,374,433.86   | 4,704,270.71  | 145.44% | 31.1% |
| 1196 | 시공비(인건비/총공사량) | 시공비(인건비/총공사량) | 1             | 74,786,496.200  | 29   | 5    | 9             | 69%           | 31%            | 64%           | 1,081,877.80 | 1,081,843.00  | 100.00%        | 1,081,843.00  | 100.01% | 22.7% |
| 715  | 정수유출차수리용      | 정수유출차수리용      | 1             | 121,100,000.000 | 42   | 0    | 13            | 68%           | 31%            | 55%           | 1,727,407.46 | 1,511,853.05  | 1,627,670.46   | 3,198,473.21  | 178.29% | 26.8% |
| 744  | 정수유출차수리용      | 정수유출차수리용      | 1             | 28,807,000.000  | 19   | 1    | 3             | 83%           | 17%            | 63%           | 888,773.90   | 329,473.87    | 287,140.00     | 588,168.87    | 66.00%  | 16.6% |
| 1196 | 정수유출차수리용      | 정수유출차수리용      | 1             | 94,915,534.42   | 27   | 6    | 0             | 100%          | 0%             | 100%          | 1,116,739.60 | 1,631,663.81  | 100.00%        | 1,631,663.81  | 122.24% | 20.1% |
| 1199 | 유출차수리/인양토     | 유출차수리/인양토     | 1             | 142,183,000.000 | 30   | 0    | 8             | 73%           | 27%            | 67%           | 2,163,997.20 | 1,378,327.94  | 891,400.00     | 2,270,127.94  | 104.93% | 54.0% |
| 716  | 정수유출차수리용      | 정수유출차수리용      | 1             | 117,822,695.000 | 30   | 0    | 13            | 57%           | 43%            | 100%          | 1,780,753.99 | 1,780,313.87  | 1,598,656.49   | 3,146,947.02  | 164.28% | 24.0% |
| 913  | 다수유출차수리용      | 다수유출차수리용      | 1             | 69,228,645.665  | 30   | 0    | 2             | 95%           | 5%             | 96%           | 1,027,964.00 | 1,027,000.00  | 100.00%        | 1,027,000.00  | 99.99%  | 31.1% |
| 915  | 다수유출차수리용      | 다수유출차수리용      | 1             | 151,380,000.000 | 10   | 0    | 0             | 100%          | 0%             | 100%          | 247,531.87   | 247,594.11    | 247,594.11     | 247,594.11    | 100.00% | 18.9% |
| 0    | 정수유출차수리용      | 정수유출차수리용      | 1             | 173,172,286.239 | 04   | 0    | 15            | 81%           | 19%            | 66%           | 2,028,893.42 | 1,985,882.42  | 1,499,451.670  | 3,482,320.12  | 171.78% | 33.2% |

[그림 V-1] 분석 데이터의 DB화 결과

## 2. 실태조사 분석

### 1) 공사종류별 안전보건관리비 평균 집행율

공사종류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대비 집행율을 분석한 결과, 일반건설(을)을 제외하면 대부분 계상금액 대비 초과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 평균 약 117.73% 정도 초과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2〉 공사종류별 안전보건관리비 평균 집행률

| 구분           |      | 금액구간별 평균 집행률 |             |              |             | 공사기간별 평균 집행률 |             | 평균          |
|--------------|------|--------------|-------------|--------------|-------------|--------------|-------------|-------------|
|              |      | 5억원 미만       | 5억~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 보건관리자 선임    |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             |
| 일반건설(갑)      | 건축   | 110.70<br>%  | 116.36<br>% | 116.18<br>%  | 115.18<br>% | 117.13<br>%  | 149.46<br>% | 115.86<br>% |
|              | 토목   | 101.88<br>%  | 109.04<br>% | 127.35<br>%  | 127.35<br>% | 115.62<br>%  | 135.40<br>% | 124.55<br>% |
|              | 기타   | 113.02<br>%  | 101.25<br>% | 109.524<br>% | -           | 107.52<br>%  | 110.39<br>% | 106.83<br>% |
|              | 소계평균 | 109.44<br>%  | 108.57<br>% | 119.78<br>%  | 125.39<br>% | 114.81<br>%  | 135.13<br>% | 118.01<br>% |
| 일반건설(을)      |      | 96.93%       | 105.01<br>% | 88.68%       | -           | 95.36%       | -           | 95.36%      |
| 중건설          |      | -            | -           | 132.42<br>%  | 125.04<br>% | -            | 125.55<br>% | 125.55<br>% |
| 철도·궤도신설공사    |      | -            | 92.59%      | 125.70<br>%  | 114.46<br>% | 130.32<br>%  | 113.26<br>% | 120.35<br>% |
|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      | 104.91<br>%  | 104.81<br>% | 123.20<br>%  | 140.75<br>% | 128.59<br>%  | 138.52<br>% | 115.98<br>% |
| 전체 평균        |      | 107.29<br>%  | 107.53<br>% | 120.26<br>%  | 125.33<br>% | 115.99<br>%  | 133.13<br>% | 117.73<br>% |

공사종류별로 볼 때 ‘중건설공사(125.55%) > 일반건설(갑) 토목(124.55%) > 철도궤도 공사(120.35%) > 특수 및 기타공사(115.98%) > 일반건설(갑) 건축(115.86%) > 일반건설(을) 95.36’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건축공사가 토목공사 보다 집행율이 크고 대규모인 경우에는 토목공사가 건축공사보다 집행율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공사규모가 커질수록 초과 집행금액 비율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사기간이 48개월 이상인 공사가 48개월 미만 보다 집행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실무자들과 인터뷰 시 도출되었던 공사기간이 길수록, 공사규모가 클수록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집행비용 초과된다는 점, 토목공사가 건축공사 보다 집행비용 크다는 점 등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일반공사(갑)에 포함된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를 비교하여 공사금액 규모가 커질수록 계상금액 대비 집행금액의 비율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토목공사는 건축공사에 비해 선형적 공사라 근로자의 활동 반경 및 작업특성이 분산되어 있어 안전관리 범위도 분산되며 장비 위주 공사가 많은데 비해 대상액에 있어 기계경비가 누락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분이 부족하며 일정규모 이상 공사는 공사기간이 길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이 기인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3〉 건축 및 토목공사의 차이 분석

| 구분               | 건축공사   | 토목공사   |
|------------------|--|--|
| 공사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형공사 : 대지 내에서 수직적으로 공사 수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형공사 : 여러 대지를 수평적으로 공사 수행</li> <li>대상액에 있어 기계경비가 누락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비 계상 부족</li> </ul> |
| 근로자 활동반경<br>작업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약적 공사로서 근로자의 활동반경도 한정되어 있어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범위가 집중</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형에 따라 다양한 대지 특성을 반영하여 공사를 수행하므로 근로자 활동반경이 선형에 따라 넓게 형성되고 장비 위주 공사 수행</li> </ul>      |
| 시설물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 내 유사 특성을 갖는 시설물을 공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 내 성토/절토, 교량, 터널, 하천 등 상호 다른 시설물을 공사</li> </ul>                                     |
| 공사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일 규모라 하더라도 최대 48개월 이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최대 70개월 이상 공사 수행 → 전담 안전관리자 인건비 비중 높음</li> </ul>                         |

## 2) 공사종류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비중

공사종류별로 고시에서 정한 9개의 사용 항목별 집행 비중을 조사한 결과, 공사종류별로 공통적으로 1번 안전관리자 인건비 등, 2번 안전시설물, 3번 개인보호구 등 3개의 사용항목이 전체의 85% 내외의 집행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공사종류별로는 일반건설(갑) 건축공사의 경우, ‘안전시설비(38.0%) > 인건비(32.7%) > 개인보호구(18.0%)’ 순으로 분석되었다.

일반건설(갑) 토목공사의 경우, ‘인건비(42.5%) > 개인보호구(24.5%) > 안전시설물(19.7%)’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중건설, 철도궤도 공사도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수 및 기타 기타공사의 경우, ‘개인보호구(37.0%) > 인건비(29.08%) > 안전시설물(14.4%)’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V-4〉 공사종류별 안전관리비 사용항목 비중 분석

(단위 : %)

| 구분          | 일반(갑) | (갑)건축 | (갑)토목 | (갑)그외 | 일반(을) | 중건설   | 철도궤도  | 특수기타  | 전체    |
|-------------|-------|-------|-------|-------|-------|-------|-------|-------|-------|
| 1. 인건비 소계   | 33.9  | 32.7  | 42.5  | 17.6  | 16.3  | 54.8  | 48.0  | 29.8  | 34.2  |
| 1-1)안전 관리자  | 26.2  | 24.7  | 33.0  | 14.0  | 12.4  | 41.6  | 42.7  | 27.8  | 27.4  |
| 1-2)보건 관리자  | 1.4   | 1.4   | 2.0   | 0.1   | 0.4   | 6.0   | 0.4   | 0.4   | 1.3   |
| 1-3)신호수     | 4.6   | 3.3   | 6.3   | 3.3   | 1.0   | 2.8   | 3.2   | 1.4   | 3.9   |
| 1-4)그 외     | 1.7   | 3.3   | 1.2   | 0.2   | 2.6   | 4.4   | 1.7   | 0.2   | 1.6   |
| 2. 안전 시설물   | 25.8  | 38.0  | 19.7  | 18.1  | 20.5  | 19.5  | 11.3  | 14.4  | 22.8  |
| 3. 개인 보호구   | 25.5  | 18.0  | 24.5  | 40.3  | 48.2  | 14.8  | 27.5  | 37.0  | 27.7  |
| 4. 안전 진단비   | 2.0   | 2.8   | 2.2   | 0.4   | 1.5   | 4.3   | 1.7   | 1.1   | 1.9   |
| 5. 교육비      | 2.3   | 2.1   | 2.1   | 2.9   | 1.6   | 2.8   | 2.8   | 3.3   | 2.5   |
| 6. 건강 관리비   | 3.2   | 2.4   | 2.8   | 5.4   | 2.9   | 3.4   | 3.8   | 3.9   | 3.3   |
| 7. 기술 지도비   | 6.9   | 3.7   | 5.7   | 15.0  | 8.8   | 0.0   | 4.7   | 10.0  | 7.2   |
| 8. 본사 사용비   | 0.2   | 0.2   | 0.4   | 0.1   | 0.0   | 0.2   | 0.1   | 0.0   | 0.2   |
| 9. 위험성 평가비용 | 0.2   | 0.3   | 0.1   | 0.2   | 0.2   | 0.1   | 0.1   | 0.4   | 0.2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이와 같이 건축공사, 토목공사, 기타 공사 등 공사특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비중이 조금씩 다르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3. 고시개정 방향성에 대한 의견 수렴

#### 1)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액 적정 여부

현행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5점 척도(① 매우 부적정~⑤ 매우적정)로 조사한 결과, 전체평균 2.6으로 전반적으로 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액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공사 종류 및 공사기간에 따라 약간의 인식 차이가 있으며 공사규모가 클수록 공사기간이 길수록 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공사종류별에서는 ‘중건설(1.74) > 토목공사(2.44) > 건축공사(2.61) > 기타공사(2.87)’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V-5〉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액 적정성 인식조사 결과

| 구분    | 공사규모  |                 |        |      | 공사기간       |            |
|-------|-------|-----------------|--------|------|------------|------------|
|       | 5억 미만 | 5억 이상<br>50억 미만 | 50억 이상 | 전체평균 | 48개월<br>미만 | 48개월<br>이상 |
| 건축공사  | 2.95  | 2.71            | 2.61   | 2.61 | 2.67       | 2.00       |
| 토목공사  | 2.85  | 3.08            | 2.23   | 2.44 | 3.08       | 1.97       |
| 기타공사  | 3.09  | 3.02            | 2.59   | 2.87 | 2.87       | 2.45       |
| 중건설공사 | -     | 3.00            | 1.71   | 1.74 | 2.50       | 2.00       |
| 전체평균  | 3.01  | 2.98            | 2.39   | 2.60 | 2.80       | 2.06       |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액 적정성 여부는 금액구간별, 공사기간별, 공사종류별 인터뷰 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공사종류 재분류 필요성

현행 안전보건관리비의 공사종류에 대해 재분류 필요성 여부를 5점 척도 (① 매우 필요없다~⑤ 매우 필요하다)로 조사한 결과, 공사종류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사 재분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건설(3.77) > 토목공사 (3.08) > 기타공사(3.07) > 건축공사(2.85)’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공사규모가 클수록, 공사기간이 길수록 필요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표 V-6〉 공사종류 재분류 필요성 인식조사 결과

| 구분    | 공사규모  |                 |        |      | 공사기간       |            |
|-------|-------|-----------------|--------|------|------------|------------|
|       | 5억 미만 | 5억 이상<br>50억 미만 | 50억 이상 | 전체평균 | 48개월<br>미만 | 48개월<br>이상 |
| 건축공사  | 2.45  | 2.88            | 2.88   | 2.85 | 2.82       | 4.00       |
| 토목공사  | 2.70  | 2.89            | 3.17   | 3.08 | 2.81       | 3.35       |
| 기타공사  | 3.09  | 2.91            | 3.22   | 3.07 | 3.07       | 3.08       |
| 중건설공사 | -     | 3.00            | 3.79   | 3.77 | 3.50       | 3.80       |
| 전체평균  | 2.89  | 2.90            | 3.12   | 3.04 | 2.88       | 3.33       |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중 집행 부족 항목

현행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중 집행에 있어 가장 부족한 항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사종류 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현행 집행비에 따른 사용항목 비중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축공사의 경우, ‘2번 안전시설비 > 1번 안전관리자 인건비 > 3번 개인보호구 등’의 순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인데 반해 토목공사 및 중건설의 경우, ‘1

번 안전관리자 인건비 > 2번 안전시설비 > 3번 개인보호구 및 장비' 순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이 나타났다. 반면 기타공사의 경우, '3번 개인보호구 및 장비 > 1번 안전관리자 인건비 > 2번 안전시설비' 순으로 부족 인식이 나타났으나 비율은 상호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사종류별 안전관리비 집행 비중과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공사기간이 길수록 인건비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7〉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중 집행 부족항목 조사 결과

| 구분        | 공사종류   |        |        |        | 공사기간    |         |
|-----------|--------|--------|--------|--------|---------|---------|
|           | 건축     | 토목     | 기타     | 중건설    |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
| 1. 인건비    | 35.73% | 38.75% | 24.91% | 51.56% | 30.99%  | 50.68%  |
| 2. 안전시설비  | 39.72% | 33.57% | 21.65% | 28.13% | 32.22%  | 29.50%  |
| 3. 개인보호구  | 10.38% | 13.07% | 24.91% | 14.06% | 17.74%  | 10.59%  |
| 4. 안전진단비  | 2.00%  | 0.94%  | 7.73%  | 1.56%  | 2.17%   | 1.35%   |
| 5. 교육비    | 2.40%  | 3.77%  | 4.12%  | 0.00%  | 3.69%   | 1.13%   |
| 6. 건강관리비  | 4.19%  | 2.83%  | 8.42%  | 1.56%  | 5.72%   | 2.25%   |
| 7. 기술지도비  | 1.40%  | 3.53%  | 4.81%  | 0.00%  | 3.48%   | 0.90%   |
| 8. 본사사용비  | 2.40%  | 1.65%  | 1.20%  | 0.00%  | 1.88%   | 1.80%   |
| 9. 위험성 평가 | 1.80%  | 1.88%  | 2.23%  | 3.13%  | 2.10%   | 1.80%   |

#### 4)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의 적정성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의 개선 필요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공사 분류에서 현장 특성에 따라 융통성있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따라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집행을 유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강제 규정보다는 공사 특성에

따라 집행율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 하자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8〉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 적정성 인식조사 결과

| 구분                 | 공사종류   |        |        |        | 공사기간    |         |
|--------------------|--------|--------|--------|--------|---------|---------|
|                    | 건축     | 토목     | 기타     | 중건설    |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
| 현장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 | 75.00% | 77.38% | 76.87% | 85.71% | 75.57%  | 80.75%  |
| 현행 유지              | 25.00% | 22.62% | 23.13% | 14.29% | 24.23%  | 19.25%  |

## 4. 안전보건관리비 요율 개정(안)

### 1) 공사종류별 재분류 검토

실태조사 결과, 공사종류별로 계상금액 대비 집행금액이 차이가 있으며 사용 항목별 집행 비중도 상호 다르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건축과 토목을 비교해 볼 때 건축은 시설비 비중이 높고 토목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사규모가 클수록 토목공사는 공사기간에 영향을 받아 인건비 집행 비중이 커지며 이에 따라 초과 집행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대형규모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60개월 이상 되는 공사가 많은데 동일 규모의 건축공사는 평균 36개월 이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는 기타공사와 사용항목 비중에 있어 상당한 유사성이 있으며 기타공사에 있는 택지개발은 토목공사와 사용항목에 있어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특징으로 볼 때 현행 고시 기준상에 공사 종류를 안전관리비 집행

특성에 맞게 재분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안 1) 「건설산업기본법」을 토대로 공사 종류를 재분류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행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공사원가 제비율 산정을 살펴 보면 건축, 토목, 산업설비 및 조경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별지 제17호에 따른 공사 실적 관리대장과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다. 다만 별도의 개별 법령에서 존재하는 기타공사(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 수리)와 조경은 별도의 공사종류로 통합하고, 중건설은 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타 공사종류에 통합하기보다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안 2) 현행 공사종류 분류 내에서 시설물 유형에 따른 일부만 재분류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인터뷰 결과 및 안전관리비 집행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교량 및 터널 등이 포함되는 도로공사와 철도 노반공사는 공사기간이 길어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며 인건비는 고정비용으로서 사용항목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 다른 사용항목에 영향을 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일반건설(갑)에 있는 원자력 등의 발전시설을 중건설의 화력 발전시설처럼 난이도가 있어 대형 및 장기공사로 사용되는 특성상 중건설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택지개발의 경우, 대규모 공사로서 토지 정리 외에 하천 및 도로 등 복합 시설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건설(갑)으로 재분류 할 필요가 있다.

〈표 V-9〉 공사종류 분류체계 재편방안

| 구분    |       | 공종구성   |
|-------|-------|--|
| ALT 1 | 건축    | 일반공사(갑)의 건축 + 일반공사(을)의 건축                      |
|       | 토목    | 일반공사(갑)의 토목 + 일반공사(을)의 토목 + 특수/기타의 택지개발        |
|       | 중건설   | 현행 중건설 + 일반공사(을)의 원자력발전시설 등                    |
|       | 기타    | 현행 특수/기타 + 일반공사(갑)의 건축·토목전기, 전기, 정보통신, 소방 + 조경 |
| ALT 2 | 일반(갑) | 현행 일반공사(갑)에서 대형 도로 제외 + 특수/기타의 택지개발            |
|       | 일반(을) | 현행 일반공사(을) 유지                                  |
|       | 중건설   | 현행 중건설 + 일반공사(갑)의 대형도로 + 궤도/노반 + 원자력발전시설       |
|       | 철도궤도  | 현행 철도/궤도                                       |
|       | 특수기타  | 현행 특수/기타                                       |

## 2) 요율 개정 산출 방법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총 1,579부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1~2차 전처리 과정을 통한 유효 데이터 985부를 도출하였다. 특히 전처리 과정 중 프로젝트별 데이터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및 집행금액과 공사원가 계산서 상 직접비 입력 내용을 비교하여 총 공사비 대비 안전보건관리비가 점유하는 비중을 도출하였다.

평균적으로 건축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 대비 안전보건관리비 점유비중이 1.3~1.5% 범위, 토목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 대비 안전보건관리비 점유비중이 1.0~1.3%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여기에  $\pm 20\%$ 의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총공사비 대비 안전보건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0.8~최대 2.0범위 내에 있는 데이터를 유효 데이터로 확정하였다.

### ■ 데이터 전처리 과정

- 총 1,579부 중 → 985부 ; 부실 작성, 공정을 50% 미만,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 현장 중 인건비 누락  
공사원가 계산서상 재료비, 직접노무비, 관급자재비를 토대로 안전관리비 계상 금액 자체 산출하여 실제 입력한 안전관리비 계상 금액 비교 후 총공사금액과 산출된 안전관리비 계상금액 비율 비교 ; 총공사비 대비 0.8~2.0 범위 내 유효 데이터

### ■ 산술평균

- 공사 종류 및 금액기준 분류체계 집단 내 프로젝트별 개선요율(=현행요율X집행률)의 평균  
단, 집단내 데이터 없는 구간(중건설 5억미만, 50억원 미만), 기타공사 보건관리자 선임 구간 등 금액 구간 평균 비율 반영

### ■ 가중평균

- 공사비규모에 의한 가중치를 반영한 개선요율의 평균
- $\Sigma(\text{집단내 프로젝트별 개선된 안전관리비 계상액}^*) / \Sigma(\text{집단내 프로젝트별 총공사비})$   
\* 개선된 안전관리비 계상액 = 총공사비 X 개선요율

## [그림 V-2] 요율 개정 산출 방법

먼저, 해당 유효 데이터를 대상으로 공사 종류 및 금액 기준 분류에 따라 집단 내 프로젝트별 개선요율(현행요율 x 집행율)의 평균한 산술평균 값으로 산정하였다. 단, 집단 내 데이터가 없거나 적은 구간(중건설 5억원 미만 및 5억~50억원 미만 구간, 기타공사의 보건관리자 선임구간 등)은 전체 금액 구간의 평균 비율을 반영하였다.

또한, 유효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공사비 규모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하고자 프로젝트 분류체계 및 금액기준에 따라 집단내 프로젝트별 개선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액의 합과 집단내 프로젝트별 총공사비를 나눈 값으로 가중 평균 값도 산정하였다. 여기서 개선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액이란 해당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공사비에 개선요율을 곱한 값을 의미한다.

### 3) 「건설산업기본법」 기준 공사 재분류 효율 개정(안)

고시에서 정한 기존 공사종류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축, 토목, 기타공사 및 중건설로 구분하여 공사규모별 산술 평균한 값은 표 V-10과 같다.

〈표 V-10〉 건설산업기본법 근거에 따른 공종별 산술평균 값

| 구분  | 대상액 규모   | 현행<br>(A) | 개선<br>(B) | 증감(C)<br>B-A | 증감율<br>(B/A)*% |
|-----|----------|-----------|-----------|--------------|----------------|
| 건축  | 5억원 미만   | 2.93%     | 3.24%     | 0.31%        | 11%            |
|     | 50억원 이상  | 1.93%     | 2.23%     | 0.30%        | 15%            |
|     | 보건관리자 선임 | 2.11%     | 2.44%     | 0.32%        | 15%            |
| 토목  | 5억원 미만   | 2.95%     | 2.99%     | 0.05%        | 2%             |
|     | 50억원 이상  | 1.92%     | 2.45%     | 0.52%        | 27%            |
|     | 보건관리자 선임 | 2.12%     | 2.75%     | 0.62%        | 29%            |
| 기타  | 5억원 미만   | 2.55%     | 2.68%     | 0.12%        | 5%             |
|     | 50억원 이상  | 1.60%     | 1.89%     | 0.29%        | 18%            |
|     | 보건관리자 선임 | 1.58%     | 1.96%     | 0.38%        | 24%            |
| 중건설 | 5억원 미만   | 3.43%     | 3.70%     | 0.27%        | 8%             |
|     | 50억원 이상  | 2.44%     | 2.94%     | 0.50%        | 20%            |
|     | 보건관리자 선임 | 2.66%     | 3.29%     | 0.63%        | 24%            |

현행은 표본 집단 내에서 표본이 기존 효율을 적용시 평균<sup>15)</sup>을 의미하며 개선효율은 표본 집단 내 집행효율을 적용 시 평균을 의미한다.

그 결과, 표에서와 같이 소규모(5억원 미만)에서는 건축공사가 토목공사보다 효율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규모 공사로 갈수록 토목공사가 건축공사에 비해 효율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15) 표본의 기존효율 적용시 평균이란 해당 집단내(예 5억원 미만 건축) 표본 중 일반건설(값)을 적용한 표본과, 일반건설(을)을 적용한 표본 등을 합산하여 평균을 낸 것을 의미

또한 기타공사의 경우, 기존 일반건설(갑)을 적용한 요율 보다는 작고 기타공사 요율 보다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요율 상승분을 볼 때, ‘토목공사 > 중건설 > 기타공사 > 건축공사’ 순으로 분석되었다.

공사 종류별 및 공사 규모별 산술 평균한 값을 대상으로 5억원 미만과 50억원 이상으로 구분한 평균 값을 산정한 후 중간 값(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비례선으로 도출한 안전관리비 개정(안)을 도출하면 표 V-11과 같다.

가중 평균에 의한 개정 요율을 기준으로 현행 일반건설(갑)과 비교한 건축공사의 경우, 5억 미만에서는 0.3P(증감율 +10.2%), 50억원 이상 +0.23P(증감율 +11.7%),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0.33P(증감율 +15.3%)가 상승이 도출되었다.

현행 일반건설(갑)과 비교한 토목공사의 경우, 5억 미만 0.04P(증감율 +1.3%), 50억원 이상 0.58P(증감율 +29.4%),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에서는 0.60P(증감율 +27.9%) 요율 상승이 도출되었다.

현행 중건설공사와 비교한 중건설 공사의 경우, 5억 미만 0.27P(증감율 +7.8%), 50억원 이상 0.5P(증감율 +20.5%),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에서는 0.54P(증감율 +20.3%)요율 상승이 도출되었다.

기타공사와 비교한 기타공사의 경우, 5억원 미만 0.94P(증감율 +50.8%) , 50억원 이상 0.5P(증감율 +48.0%),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0.58P(+42.0%) 요율 상승이 도출되었다. 기타공사의 경우, 유효데이터 범위내에 있는 일반건설(갑)으로 발주된 건축 및 토목공사에 부대하여 행하는 전기, 정보통신공사가 기타공사로 전환되어 반영된 결과로서 표본집단내 실제 기타공사의 요율 상승분이 20% 내외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11〉 건설산업기본법 근거에 따른 요율 개정(안)

| 1. 현행 안전보건관리비 요율 |       |              |            |        |          |
|------------------|-------|--------------|------------|--------|----------|
| 구분               | 5억 미만 | 5억 이상 50억 미만 |            | 50억 이상 | 보건관리자 선임 |
|                  |       | 적용비율         | 기초액        |        |          |
| 일반(갑)            | 2.93% | 1.86%        | 5,349,000원 | 1.97%  | 2.15%    |
| 일반(을)            | 3.09% | 1.99%        | 5,449,000원 | 2.10%  | 2.27%    |
| 중건설              | 3.43% | 2.35%        | 5,400,000원 | 2.44%  | 2.66%    |
| 철도궤도             | 2.45% | 1.57%        | 4,411,000원 | 1.66%  | 1.81%    |
| 특수기타             | 1.85% | 1.20%        | 3,250,000원 | 1.27%  | 1.38%    |

| 2. 산술평균에 의한 개정 요율 |       |              |            |        |          |
|-------------------|-------|--------------|------------|--------|----------|
| 구분                | 5억 미만 | 5억 이상 50억 미만 |            | 50억 이상 | 보건관리자 선임 |
|                   |       | 적용비율         | 기초액        |        |          |
| 건축                | 3.24% | 2.12%        | 5,550,000원 | 2.23%  | 2.44%    |
| 토목                | 2.99% | 2.39%        | 3,000,000원 | 2.45%  | 2.75%    |
| 기타                | 2.68% | 1.80%        | 4,450,000원 | 1.89%  | 1.96%    |
| 중건설               | 3.70% | 2.86%        | 4,100,000원 | 2.94%  | 3.29%    |

| 3. 가중평균에 의한 개정 요율 |       |              |            |        |          |
|-------------------|-------|--------------|------------|--------|----------|
| 구분                | 5억 미만 | 5억 이상 50억 미만 |            | 50억 이상 | 보건관리자 선임 |
|                   |       | 적용비율         | 기초액        |        |          |
| 건축                | 3.23% | 2.09%        | 5,600,000원 | 2.20%  | 2.48%    |
| 토목                | 2.97% | 2.50%        | 2,425,000원 | 2.55%  | 2.75%    |
| 기타                | 2.79% | 1.78%        | 5,025,000원 | 1.88%  | 1.96%    |
| 중건설               | 3.70% | 2.86%        | 4,100,000원 | 2.94%  | 3.20%    |

#### 4) 현행 공사종류내 시설물 유형에 따른 일부 재분류 요율 개정(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고시에서 정한 공사종류 체계에서 일반건설(갑)에 있는 교량 및 터널이 포함된 도로 신설공사와 원자력 발전소 등을 중건설로 재배치하고 특수 및 기타공사의 택지개발 공사를 일반건설(갑)으로 재배치한 후 계상 요율을 표 V-12와 같이 산정하였다.

그 결과, 가중 평균을 기준으로 일반건설(갑)의 경우, 5억 미만에서는 0.28P(증감율 +9.6%), 50억원 이상 0.33P(증감율 +16.7%),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에서는 0.45P(증감율 +20.9%) 요율 상승이 도출되었다.

일반건설(을)의 경우, 5억 미만 -0.14P(증감율 -0.46%), 50억원 이상 -0.48P(증감율 -20.5%),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에서는 0.09P(증감율 +3.9%) 요율 조정이 도출되었다.

중건설 공사의 경우, 5억 미만 0.27P(증감율 +7.8%), 50억원 이상 0.18P(증감율 +7.4%), 보건관리자 선임 0.35P(증감율 +13.2%) 요율 상승이 도출되었다.

철도궤도공사의 경우, 5억원 미만 0.19P(증감율 +7.7%), 50억원 이상 0.44P(증감율 +26.5%), 보건관리자 선임 0.3P(증감율 +16.6%) 요율 상승이 도출되었다.

특수 및 기타공사의 경우, 5억원 미만 0.10P(증감율 +5.4%), 50억원 이상 0.28P(증감율 +22.0%), 보건관리자선임 0.37P(증감율 +26.8%) 요율 상승이 도출되었다.

전반적으로 공사규모가 커질수록 요율 상승폭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중건설분야가 타 공사 종류 보다 상대적으로 요율 상승 폭이 적은 이유는 일반건설(갑)에 적용되었던 도로공사 및 원자력 발전소 등 표본 값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2〉 현행 분류 내 일부 시설물 유형 재분류에 따른 요율 개정(안)

| 1. 현행 안전보건관리비 요율 |       |              |            |        |          |
|------------------|-------|--------------|------------|--------|----------|
| 구분               | 5억 미만 | 5억 이상 50억 미만 |            | 50억 이상 | 보건관리자 선임 |
|                  |       | 적용비율         | 기초액        |        |          |
| 일반(갑)            | 2.93% | 1.86%        | 5,349,000원 | 1.97%  | 2.15%    |
| 일반(을)            | 3.09% | 1.99%        | 5,449,000원 | 2.10%  | 2.27%    |
| 중건설              | 3.43% | 2.35%        | 5,400,000원 | 2.44%  | 2.66%    |
| 철도궤도             | 2.45% | 1.57%        | 4,411,000원 | 1.66%  | 1.81%    |
| 특수기타             | 1.85% | 1.20%        | 3,250,000원 | 1.27%  | 1.38%    |

| 2. 산술평균에 의한 개정 요율 |       |              |            |        |          |
|-------------------|-------|--------------|------------|--------|----------|
| 구분                | 5억 미만 | 5억 이상 50억 미만 |            | 50억 이상 | 보건관리자 선임 |
|                   |       | 적용비율         | 기초액        |        |          |
| 일반(갑)             | 3.21% | 2.21%        | 5,000,000원 | 2.31%  | 2.54%    |
| 일반(을)             | 2.99% | 1.73%        | 6,400,000원 | 1.86%  | 2.36%    |
| 중건설               | 3.70% | 2.47%        | 6,075,000원 | 2.59%  | 3.00%    |
| 철도궤도              | 2.64% | 2.03%        | 3,025,000원 | 2.09%  | 2.07%    |
| 특수기타              | 1.94% | 1.54%        | 2,000,000원 | 1.58%  | 2.15%    |

| 3. 가중평균에 의한 개정 요율 |       |              |            |        |          |
|-------------------|-------|--------------|------------|--------|----------|
| 구분                | 5억 미만 | 5억 이상 50억 미만 |            | 50억 이상 | 보건관리자 선임 |
|                   |       | 적용비율         | 기초액        |        |          |
| 일반(갑)             | 3.21% | 2.20%        | 5,025,000원 | 2.30%  | 2.60%    |
| 일반(을)             | 2.95% | 1.53%        | 7,050,000원 | 1.67%  | 2.36%    |
| 중건설               | 3.70% | 2.50%        | 6,000,000원 | 2.62%  | 3.01%    |
| 철도궤도              | 2.64% | 2.04%        | 3,000,000원 | 2.10%  | 2.11%    |
| 특수기타              | 1.95% | 1.51%        | 2,100,000원 | 1.55%  | 1.75%    |

## 5. 전문가 자문 의견 수렴

이 연구의 결과를 성공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1차에서는 건설협회 등 소속의 총 7인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실태조사 신뢰성 향상을 위한 설문 내용 구성, 공사종류별 및 규모별 데이터 수집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차 자문에서 주요 의견 수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분야 연간 단가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비 운영 방안** ; 공공분야의 연간 단가로 진행되는 공사의 경우, 1년간 예상되는 잠정물량을 유추한 후 공사원가계산에 따라 총액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총액 계약의 공사 규모는 2천만원이지만 실제 단발성 및 개별로 수행되는 공사는 소액규모로서 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연간단가계약에 있어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문공사의 경우도 동일 사유가 발생하고 있으나 규정이 없어 안전보건관리비를 미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경우, 유지보수 공사로 진행되는 상하수도 정비, 도로포장 공사 등이 빈번하며 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 소홀을 우려하여 별도의 방침<sup>16)</sup>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자문회의 결과,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연간 단가계약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비는 총액규모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둘째,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비 보장 방안** ; 현행 하도급사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원도급사 내규에서 공종 중요도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16) 서울시,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제고 방안, 행정부시장 방침, 제40호(2022.02.25.)

법령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원·하도급간 안전보건관리비 협의 조정 및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결과, 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원도급사에게 지급하는 법적 경비로사 사업장내 안전관리 활동은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의 책임과 권한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령으로 별도 규정을 수립하기 보다는 하수급인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에 따라 협의 조정하는 것이 더 융통성과 합리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2차 자문회의에서는 고용 노동부 등 총 7인의 정책 전문가 및 발주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 값에 대한 의견 및 공사 종류 재분류에 따른 요율 수립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요 의견 수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사종류 분류체계 개선 방안** ; 현행 고시에서 분류되어 있는 5개의 공사종류를 「건설산업기본법」 및 기타 법령 근거에 따라 건축, 토목, 중건설, 기타공사로 분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둘째, 안전보건관리비 요율 개선 방안** ; 현행 기준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17% 정도 수준의 요율 상승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있으며 다만, 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상승과 공사비의 증가 측면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또한 현행 요율에 따라 계상되는 안전보건관리비는 최소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최대기준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공사기간에 따라 추가 할증 기준을 마련 시에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공사기간에 따른 요율 할증 방안은 현재 수준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수렴되었다.

3차 자문회의에서는 건설협회 등 총 5인의 건설 단체 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 값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대체적인 이 연구의 요율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요 의견 수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사종류 및 안전보건관리비 요율 개선 방안** ; 현행 고시 분류 기준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기타 법령 근거에 따라 건축, 토목, 증건설, 기타공사로 분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며 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상승 비율도 약 17% 정도 상향이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다만, 최근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신설항목(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관련 임대비, 위험성 평가 비용 등)은 현 시점에서 실태조사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실정이며, 따라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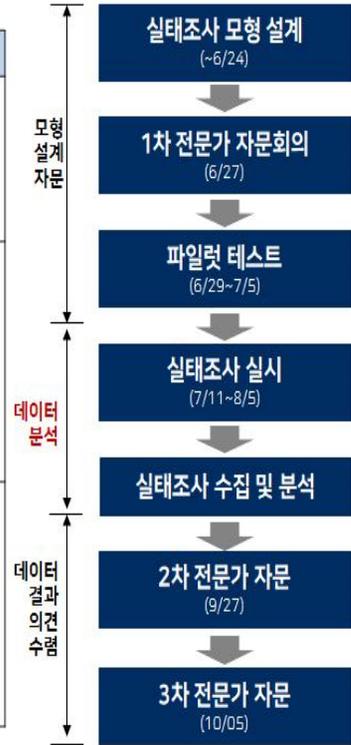
**둘째,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또한 민간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비 증액에 따라 다소 이윤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공사비가 3억원 일 때 안전보건관리비가 전체 공사비의 약 1.5% 수준임을 감안할 때 대략 450만원 내외로, 안전보건관리비가 20% 증액된다 하더라도 90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비는 정산의 의무가 있고 안전강화를 위한 추가비용으로서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편 자체사업을 수행하는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적 분위기가 자발적 안전강화를 요구하는 시점에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요율보다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추세로서 요율 상향 조정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수렴되었다.

이와 같은 전문가 자문 절차 및 자문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 구분         | 참석기관  | 자문내용   |
|------------|---|--|
| 1차<br>자문의의 | 총 7인<br>•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br>• 정보통신공사협회<br>• 전기공사협회, 한국중임안전<br>• 안전보건공단  | • 공사종류별 및 규모별 데이터 수집 방법<br>• 실태조사 신뢰성 향상을 위한 설문 내용<br>• 파일럿 테스트 및 실태조사 지원 방안   |
| 2차<br>자문의의 | 총 7인<br>• 고용노동부 2인<br>• NH 공사<br>• 도로공사<br>• 한국전력 경영연구원<br>• 안전보건공단 등 | • 기존 고시 대비 20% 내의 요율 상승은 합리적 수준으로 판단되며 건설법 기준 분류 합리적<br>• NH가 발주하는 택지개발은 공중 계분류 시급<br>• 도로공사는 경비에 대한 비용이 높아 대상액에 경비 포함도 검토 필요<br>• 공사기간에 따른 추가 일증 방안은 현실적으로 안계   |
| 3차<br>자문의의 | 총 5인<br>• 건설협회<br>• 전문건설협회<br>• 정보통신공사협회<br>• 한국중임안전<br>• 안전보건공단 등    | • 최근 개정된 고시에 따라 신설양육의 연구 반영 여부<br>•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임대비용 증가 예상되므로 안전관리비 선 반영 필요<br>• 기존 공중분류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건설법 기준 분류가 더 적정<br>• 아도급사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마련은 불필요 ; 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할 수 있는 아도급사 인력부족 등에 따라 연행 체계 유지가 적당하다는 의견 수렴 |



[그림 V-3]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결과

## VI. 고시 개정(안)





## VI. 고시 개정(안)

### 1. 고시 내용 개정 사항

#### 1) 고시 제3호(적용범위) 연간단가 공사

현행 고시 제3조(적용범위)에 있어 연가 단가 공사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고 있으며 단,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 공사의 단가계약은 총 계약금액 기준을 적용하도록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

인터뷰조사 결과, 전문공사(상하수도, 도로 유지보수 공사 등)의 연간 단가 계약도 총 계약 금액 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전문공사 역시 총 공사금액으로 연가단가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개별 발주 되는 공사들은 2천만원이 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문공사도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 공사와 같이 유사 연간 단가계약을 맺는 경우 총공사금액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고시 기준에 있어 제3조(적용범위)에 있어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며 연간단가 계약은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문구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표 VI-1〉 고시 제3조(적용범위)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 제3조(적용범위)<br>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br>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중 단가계약에 의해 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br>1. 「전기공사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 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br>2. 「정보통신공사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 | 제3조(적용범위)<br>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연간단가계약에 의해 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br>(이하 내용 삭제) |

## 2) 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고시에서 정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권고사항이기는 하나 안전관리자들이 사용기준을 가급적 준용하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터뷰 조사결과, 안전관리자들은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은 권고사항이기 하나 공사 특성상 법령에서 정한 사용기준이 안전관리비 사용에 제한을 줄 수 있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신설로 인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비 집행 유도 효과도 발생하고 있어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공사진척과 안전관리비 사용이 다르므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기준 완화 또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민간공사의 경우, 해당 사용기준이 없을 경우, 자발적 사용 유도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만큼 현장 특성에 따라 사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달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3)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고시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은 5개의 공사종류로 구분하여 규모별 요율 차등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사종류의 구분은 별표 5(부록 2참조)에서 별도 정하고 있다.

인터뷰 결과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공사 종류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 및 토목공사로 구분하고 조경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타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와 함께 구분하여 건설공사 재분류하였다. 단, 중건설 분야는 실태조사 결과, 집행비율 타 공사 종류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현행을 유지하고 일부 산업설비 분야(예, 원자력 발전소 신설) 등을 추가한 공사 종류 재분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표 VI-2〉 별표 5 건설공사 종류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 1. 일반건설(갑)<br>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기계장치 공사 이외의 건축건설, 도로건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를 현장내에서 행하는 공사                                  | 1. 건축공사<br>「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1) '나'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br>에 따라 토지에 정착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br>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동법 시행규칙(별표<br>3)에서 구분한 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 및 이와 부대한 공사  |
| 2. 일반건설(을)<br>각종 기계, 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   | 2. 토목공사<br>「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1) '가'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br>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및<br>'라'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br>오염을 예방·제거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br>시설 등의 건설공사로서 동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구분한 토목공사<br>및 산업환경 설비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 및 이와 부대한 공사. 단,<br>중건설 해당 공사 제외 |
| 3. 중건설공사<br>고제방(댐), 수력발전시설, 터널 등을 신<br>설하는 공사  | 3. 중건설공사<br>「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1) '가' 목 및 '라'목에 해당 되는 공사<br>중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부대한 공사 (고제방 댐 공사, 화력/수력<br>/원자력시설 등)  |
| 4.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br>철도 또는 궤도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br>부대하여 행하는 공사(기설 노반 또는<br>구조물해서 행하는 철도·궤도 신설공사<br>에 한정)                          | 4. 기타공사<br>「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1) '마'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br>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br>등의 건설공사로서 동법 동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구분한 조경 공사<br>에 해당하는 공사와 개별 법령으로 수행되는 기타 공사(전기·정보통<br>신·소방·문화재 수리)로 분류된 공사와 이와 부대한 전문 공종 공사   |
| 5. 특수 및 기타 공사<br>다른 공사와 분리발주되어 시간, 장소적<br>으로 독립적으로 행하는 공사<br>(1)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br>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br>(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 |   |

#### 4)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표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4개의 공사종류로 가정하여 가중 평균 값을 적용한 개선 요율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VI-3〉 별표 1 안전보건관리 계상기준표 개정(안)

| 현행    |       |              |            |        |          |
|-------|-------|--------------|------------|--------|----------|
| 구분    | 5억 미만 | 5억 이상 50억 미만 |            | 50억 이상 | 보건관리자 선임 |
|       |       | 적용비율         | 기초액        |        |          |
| 일반(갑) | 2.93% | 1.86%        | 5,349,000원 | 1.97%  | 2.15%    |
| 일반(을) | 3.09% | 1.99%        | 5,449,000원 | 2.10%  | 2.27%    |
| 중건설   | 3.43% | 2.35%        | 5,400,000원 | 2.44%  | 2.66%    |
| 철도궤도  | 2.45% | 1.57%        | 4,411,000원 | 1.66%  | 1.81%    |
| 특수기타  | 1.85% | 1.20%        | 3,250,000원 | 1.27%  | 1.38%    |
| 개정(안) |       |              |            |        |          |
| 구분    | 5억 미만 | 5억 이상 50억 미만 |            | 50억 이상 | 보건관리자 선임 |
|       |       | 적용비율         | 기초액        |        |          |
| 건축    | 3.23% | 2.09%        | 5,600,000원 | 2.20%  | 2.48%    |
| 토목    | 2.97% | 2.50%        | 2,425,000원 | 2.55%  | 2.75%    |
| 기타    | 2.79% | 1.78%        | 5,025,000원 | 1.88%  | 1.96%    |
| 중건설   | 3.70% | 2.86%        | 4,100,000원 | 2.94%  | 3.20%    |

## 2. 고시 개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이 연구에서 수행한 분석을 통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은 현행 기준 대비 약 17% 수준에서의 상향이 현실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계상요율의 상향은 현행 고시에서 규정된 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이며, 따라서 규제영향분석이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규제영향분석은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관련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 관련 평가항목은 국무조정실이 운영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 내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규제의 필요성,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분석과 비교,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현실적인 안전보건관리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계상요율의 상향과 관련된 규제영향분석서(안)은 표 VI-4와 같다.

〈표 VI-4〉 계상요율 상향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안)

| 평가항목                   |               | 세부내용  |
|------------------------|---------------|---|
| 규제의 필요성                | 문제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사업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의 재해 발생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용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li> <li>○ 이에 지속적인 고시 개정이 수행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용항목 확대·신설(예. 스마트 안전제품 사용인정, 위험성 평가 비목 신설 등)</li> <li>○ 이와 같은 지속적인 사용항목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항목 운용비용 확보에 관한 검토는 미흡한 실정</li> <li>○ 실제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행 요율에 따라 계상된 비용으로는 현실적인 안전보건관리 활동이 어렵다는 의견 수렴</li> </ul> |
|                        |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고시를 통해 확대된 사용항목을 운용할 수 있는 현실적 비용 확보 및 최근 안전 관련 법령 강화 추세를 고려할 때 계상요율을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재해예방 및 건강 확보라는 안전보건관리비의 본질적인 운영 목적 달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li> </ul>  |
|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대안의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요율 대비 약 20% 수준에서의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li> </ul>   |
|                        |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 <p>1. 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비 중 경비항목에 포함된 비용으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에 해당하는 공사종류 및 규모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요율 상향 시 발주자의 공사비 부담이 증가할 소지가 있음.</li> </ul>   |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용역 수행단계에서 진행한 전문가 인터뷰 결과, 안전보건 관리비의 계상 비용이 증액되었던 2014년 요율 상향 및 2020년 예정가격에 반영 시 안전보건관리비는 실제 증액되었으나, 공사비 내 타 비목 조정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져 실제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비의 증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li> <li>○ 또한 주요 공공발주기관들의 경우, 안전 관련 법령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외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자체적인 기준 수립·운영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 수행단계에서 주요 공공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발주기관들 역시 현행 요율에 따라 계상되는 안전보건관리비의 규모가 작다는 내용에 동의</li> </ul> </li> <li>○ 따라서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요율 상향이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li> <li>○ 소규모 민간 건축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요율 상향이 이윤 범위내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며 자체 사업 수행하는 대규모 민간건축공사의 경우, 안전강화를 위해 자발적 비용을 투입하는 현실에서 정산 목적이 있는 안전관리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준 임.</li> </ul> <p>2. 편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실적인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요율의 상향 시 대표적인 고위험 산업군으로 분류되는 건설산업에서의 재해율 절감 및 이에 따른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li> </ul> <p>3. 비용·편익 분석 비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요율 상향에 따른 충분한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건설 사업장 내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의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li> <li>○ 또한 국가 차원에서도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 가능하다는 점에서 규제의 강화는 타당할 것으로 예상</li> </ul> |
| <p>규제내용의 적정성과 실효성</p> | <p>규제의 적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설업의 재해율 절감 및 국민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상향은 적절한 규제라 예상</li> </ul>  |
|                       | <p>이해관계자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운영 주체인 공공 발주기관, 유관협회 등 소속 실무자 의견 수렴을 통해 현행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요율을 약 17% 수준에서 상향하는 것은 합리적인 규제라는 의견 수렴</li> </ul>  |
|                       | <p>규제집행의 실효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적 집행가능성 :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음.</li> <li>○ 행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적인 인력확보 및 예산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li> </ul>  |

## VII. 결론





## Ⅶ. 결론

건설산업에 있어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부여하는 법정경비’로서 옥외 현장 작업 중심인 건설산업에 있어 근로자 재해예방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보건관리비는 1988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5개의 공사종류와 4개의 공사 규모로 분류하여 요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설산업의 대형화 및 다양화, 안전과 관련된 법령 강화 등 환경 변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다양하게 도출되고 있어 이 연구는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비의 현실적인 적정 계상 기준에 대한 재정립 방향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태조사의 방법은 1) 건설업 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2) 의견 수렴 내용을 토대로 설문모형을 작성하여 공사종류별 및 규모별 실태조사를 실시 및 분석하였으며 3) 분석결과에 대해 발주기관 및 건설업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4)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건설업 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에서는 대체적으로 현행 요율 상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과 토목은 공사 성격상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특성이 다르므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택지개발 및 원자력 발전소 등이 일부 시설물도 재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또한 공사기간이 길면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데 현행 체계에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도출되었다. 아울러, 전문공사의 경우, 연간단가계약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미반영 등의 의견도 도출되었다.

둘째, 실태조사에서는 약 1,500여부의 데이터 중 유효데이터 980부에 대해 심층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현행 분류 기준에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대비 약 20% 내외 정도 초과 집행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근거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공사종류를 재분류한 요율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 구분  | 5억 미만 | 5억 이상 50억 미만 |            | 50억 이상 | 보건관리자 선임 |
|-----|-------|--------------|------------|--------|----------|
|     |       | 적용비율         | 기초액        |        |          |
| 건축  | 3.23% | 2.19%        | 5,100,000원 | 2.29%  | 2.50%    |
| 토목  | 2.97% | 2.50%        | 2,425,000원 | 2.55%  | 2.75%    |
| 기타  | 2.86% | 1.83%        | 5,075,000원 | 1.93%  | 1.95%    |
| 중건설 | 3.75% | 2.92%        | 4,075,000원 | 3.00%  | 3.20%    |

셋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주기관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요율 재분류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과 토목, 타 법령에 의한 기타공사로 구분하고 중건설 분야는 기존 분류 방식을 구분하는 요율 계상 방식이 더 현실적이다' 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넷째, 실태조사를 통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1)제3조(적용범위) 연간단가 공사는 총계약금액으로 조정하고, 2)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은 현장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 삽입, 3)별표 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과 토목, 타법령에 의한 기타공사,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에서의 중건설 등 총 4개의 공사종류에 대한 예시를 정리하였으며, 4) 별표 1(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표)에서는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안전보건관리비의 현실화를 통해 해당 비용의 적정 집행을 유도하고 건설사업장내 근로자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건설업의 안전 관련 패러다임을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연구의 실태조사는 2022년도에 고시 개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확대 및 신설 항목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향후 해당 사용 항목 확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율을 추가 조사하여 개정 요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2022.
-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2022.
-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2022.
-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계약예규, 기획재정부, 2022.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공사업법」, 2021
- 고재환. 건설안전전문가 설문조사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비 제도개선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2020.
- 김종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 및 사용기준 개선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공단. 2015.
- 김창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명성 및 사용성 개선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
- 백용현. 대규모 건설현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2020.
- 손기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및 적정요율에 관한 조사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5.
- 오세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 및 적정 계상 요율에 관한 조사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

이명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운영의 효율성 강화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공단. 2009.

염동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측 모델 개발. 한국건설관리학회. 2015.

허영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선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공단. 2017.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전문건설협회, 2021

## Abstract

# Review of Accounting Standards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in Construction Industry

### Objectives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OSH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e statutory expenses that are separately included in the cost statement by the owner to prevent occupational accidents and health problems that may occur to workers at construction sites.

OSHE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standard amount by the differentiated rate according to the 5 construction types and 4 construction scales. However, the reality is that the current appropriation method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trend of the times for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size and diversifica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social atmosphere for safety reinforc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define the standard for appropriate calculation of OSHE that can respond to such environmental

change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derived by synthesizing stakeholder interviews, data collection through surveys, and convergence of opinions on the suitability review for data analysis results.

### **Method :**

The method of this study is as follow; (1) establishment of research background through preliminary review ; (2) review of improvement directions through interviews with key stakeholders, such as safety managers ; (3)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through surveys ; (4) derivation of analysis results and review of adequacy through expert advice ; and (5) establishment of notice revision(draft).

### **Results :**

As a result, based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Framework Act, the current 5 construction types were divided into 4 construction types (architectural, civil engineering, heavy construction, and other constructions), and accordingly, a plan to revise rates for realistic OSHE was proposed. The revised rate for OSHE can be summarized as a figure that has increased by about 20% compared to the current rate.

### **Conclusion :**

The realistic appropriation plan for OSH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rough this study can induce the proper execution of OSHE in construction projects,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for workers in construction sites, and ultimately, it is expected to present a new paradigm related to safety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future research will require a review of the rate revision considering the expansion of items used for OSHE reflected in the revised notice in 2022.

**Key words :**

Construction Industry, Occupational Safety and Management Expenses, Accounting Standards, Improvement Direction



## 부록 1. 실태조사 모형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검토를 위한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본 조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재)한국조달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발주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검토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본 실태조사는 해당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됩니다.

해당 연구는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분들의 현실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현행 법령(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본 실태조사에서는 각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내역과 사용기준에 대한 실무자분들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향후 건설산업의 현실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기반이 될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자의 응답내용과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제34조(통계종사자의 의무)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응답하여 주신 사항은 본 조사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이용되지 않습니다.

**※ 본 실태조사는 총 5개 SHEE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SHEET별 누락되는 사항 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2년 0월



본 실태조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 :  
연락처 :  
e-mail :  
Fax :

## 1. 일 반 개 요

※ 모든 금액은 "원" 단위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란색 칸은 모두 작성된입니다. 최대한 공란없이 기입 부탁드립니다.

※ 중복선택 가능

| 일반정보                         |  | 작성란 | 공사특성   |   |     |    |
|------------------------------|--|-----|--|---|-----|----|
| 작성자 성명/직급                    |  |     | ①  | 전담 안전관리자가 배치된 현장이다.                     | Yes | No |
| 작성자 연락처                      |  |     | ②  | 신설이 아닌 개량 및 확장공사 현장이다.                  |     | √  |
| 현장명(공구 포함)                   |  |     | ③  | 전체 공정의 50%이상 야간에 진행되는 현장이다.             |     |    |
| 건설사(원도급)                     |  |     | ④  | 인접건물이 있어 안전시설물 및 안전관리자가 강화된 현장이다.       |     |    |
| 총공사비(원)                      |  |     | ⑤  | 고압선, 활선 등으로 안전위험이 있는 현장이다.              |     |    |
| 시설물 최고층수                     |  |     | ⑥  | 일반적인 동일공종 공사기간과 비교 시, 본 현장의 공사기간이 더 길다. |     |    |
| 착공일(년.월)                     |  |     | * 해당 공사가 상기 공사특성에 해당되는 경우,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준공예정일(년.월)                   |  |     |  |   |     |    |
| 중공사이간(개월)                    |  |     |  |   |     |    |
| 공사기간<br>공기(연장기간(개월))         |  |     | ☞ 조사현장의 공사기간과 비교하기 위험입니다. 해당 동일공종공사의 평균적인 공사기간을 작성 바랍니다. |   |     |    |
| 동일공종 공사의 일반적인 공사기간(개월)       |  |     | ☞ 선택 보기가 있습니다. 해당 셀을 누르고 화살표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공사형태(공공공사/민간공사)              |  |     | ☞ 선택 보기가 있습니다. 해당 셀을 누르고 화살표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공정률                          |  |     | ☞ 선택 보기가 있습니다. 해당 셀을 누르고 화살표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적용<br>공사종류      |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요율<br>(%)       |  |     |  |   |     |    |
|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br>집행률(%)     |  |     |  |   |     |    |
| 법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br>비 계상금액(원) |  |     |  |   |     |    |
| (법령 기준)안전관리자 수(명)            |  |     | ☞ 해당 되지 않는 경우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
| (법령 기준)보건관리자 수(명)            |  |     | ☞ 해당 되지 않는 경우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
| (실 투입 최대)안전관리자 수(명)          |  |     | ☞ 해당 되지 않는 경우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
| (실 투입 최대)보건관리자 수(명)          |  |     | ☞ 해당 되지 않는 경우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

2. 공 사 중 류

\* 해당 공사가 상기 공사특성에 해당되는 경우,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선택 가능

| 건주분야               | 선택권 |
|--------------------|-----|
| 1 단독 주택 및 연립주택     |     |
| 2 아파트              |     |
| 3 주위·시무실경용 건물      |     |
| 4 상가·백화점·쇼핑센터      |     |
| 5 사무실빌딩            |     |
| 6 오피스텔             |     |
| 7 인텔리전트빌딩          |     |
| 8 호텔·숙박시설          |     |
| 9 관광서비스업           |     |
| 10 학교              |     |
| 11 병원              |     |
| 12 전통양식건물          |     |
| 13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     |
| 14 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     |
| 15 경기장·운동장         |     |
| 16 전시시설 등 관람전시시설   |     |
| 17 창고·차고           |     |
| 18 일반공장, 작업장용 건물   |     |
| 19 퇴임당건물           |     |
| 20 기계(구)시설(물탱크 제외) |     |
| 21 위생물저장소          |     |
| 22 기타 건축공사         |     |
| 23 ※건축분야 전문공사 공통   |     |

<건축분야 전문공사 공통 예>  
일반일대건축공사, 일반포장사  
발파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석공사  
일반도장공사, 비계공사, 파면공사  
석공사, 도색공사, 천공공사 등

※ 중복선택 가능

| 토목분야             | 선택권 |
|------------------|-----|
| 24 일반도로          |     |
| 25 고속화도로         |     |
| 26 고속도로          |     |
| 27 교량(도로/철도)     |     |
| 28 교량(기타)        |     |
| 29 댐             |     |
| 30 건축시설          |     |
| 31 항만시설          |     |
| 32 공항시설          |     |
| 33 터널(도로/철도)     |     |
| 34 터널(기타)        |     |
| 35 일반철도/계도       |     |
| 36 고속철도/계도       |     |
| 37 지하철           |     |
| 38 지산·지수 및 사방화천  |     |
| 39 상·하수도         |     |
| 40 정수장           |     |
| 41 관개수로, 농지정리    |     |
| 42 매립공사          |     |
| 43 택지조성          |     |
| 44 공단영지 조성       |     |
| 45 기타 토목공사       |     |
| 46 ※토목분야 전문공사 공통 |     |

<토목분야 전문공사 공통 예>  
상수도연비공사, 하수도연비공사  
철도/계도공사, 일반포장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수중공사  
교량철구조물철거공사, 사도공사 등

※ 중복선택 가능

| 산업환경분야                   | 선택권 |
|--------------------------|-----|
| 47 하수종말처리장               |     |
| 48 폐수중말처리장               |     |
| 49 플랜트설치공사               |     |
| 50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     |
| 51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환경시설 |     |
| 52 원자력발전소                |     |
| 53 화학발전소                 |     |
| 54 열병합발전소                |     |
| 55 수력발전소                 |     |
| 56 집단에너지공시설공사            |     |
| 57 송유관                   |     |
| 58 유류저장시설                |     |
| 59 가스관                   |     |
| 60 가스저장시설                |     |
| 61 기타 산업·환경설비공사          |     |
| 62 산업환경분야 전문공사 공통        |     |

<산업환경분야 전문공사 공통 예>  
가스시설 시공(1,2,3층)  
난방시공(1,2,3층)  
기계식주차기 설치공사 등

※ 중복선택 가능

| 조경분야       | 선택권 |
|------------|-----|
| 63 수목원     |     |
| 64 공원 조성공사 |     |
| 65 기타 조경공사 |     |

※ 중복선택 가능

| 기타분야         | 선택권 |
|--------------|-----|
| 66 전기분야 시설   |     |
| 67 정보통신분야 시설 |     |
| 68 소방분야 시설   |     |
| 69 건축설비공사    |     |
| 70 공적물해체철거공사 |     |
| 71 기타        |     |

### 3. 공사비

#### 3-1. 공사원가내역

※ 모든 금액은 "원" 단위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최초 계약 기준(원) | 현재 기준(원) |
|--|-------------|----------|
| 1. 재료비                                   |             |          |
| 2. 노무비                                   |             |          |
| 2-1. 직접 노무비                              |             |          |
| 2-2. 간접 노무비                              |             |          |
| 3. 경비                                    |             |          |
| 3-1. 기계경비                                |             |          |
| 3-2. 현장경비(기타경비,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             |          |
| 4.순공사원가                                  |             |          |
| 5.일반관리비                                  |             |          |
| 6.이윤                                     |             |          |
| 7.종원가                                    |             |          |
| 8.도급금액(종원가+부가가치세)                        |             |          |
| 9.관급지체비                                  |             |          |

#### 3-2. 시설물별 공사비

※ 아래 표는 도로공사, 철도공사 현장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터널      | 교량 | 도로/철도노반 | 기타 시설물 | 전체 공사비 | 계소 | 중연장(km) | 공사비(원) | 공사비 비중 | IC 계소 | JCT 계소 | 비고 |
|--------|---------|----|---------|--------|--------|----|---------|--------|--------|-------|--------|----|
| 1      | 터널      |    |         |        |        |    |         |        |        |       |        |    |
| 2      | 교량      |    |         |        |        |    |         |        |        |       |        |    |
| 3      | 도로/철도노반 |    |         |        |        |    |         |        |        |       |        |    |
| 4      | 기타 시설물  |    |         |        |        |    |         |        |        |       |        |    |
| 전체 공사비 |         |    |         |        |        |    |         |        |        |       |        |    |

\* 1~4까지의 합계액이 전체 공사비와 동일하게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터널, 교량, 도로/철도노반은 아래 그림과 같이 구간별 구분된 값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철도노반 : 도로 ABC 구간의 공사비, 중연장을 합친 값을 기준으로 입력

\* 교량 : 교량 AB 구간의 공사비, 중연장을 합친 값을 기준으로 입력

\* 터널 : 터널 AB 구간의 공사비, 중연장을 합친 값을 기준으로 입력



## 부록 2. (별표 5) 공사종류 및 예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 종류의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건축과 토목(산업설비 포함), 기타 법령 기준에 따른 기타공사(조경공사는 기타공사로 구분) 등으로 구분함을 전제로 함. 단, 중 건설 분야는 안전관리비 계상 고유의 특성상 기존 체계를 유지하되 수력 발전 뿐만 아니라 화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도 포함하는 방안으로 설정함.

건축과 토목의 기본 분류는 시설물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분류함을 전제로 함. 예를 들어 유지보수 관련 타일공사가 단일공사로 발주될 경우, 학교 내 시설의 타일공사면 건축공사로 터널 내 타일공사면 토목공사로 설정함.

단, 별도로 발주하는 학교 내 보도블록, 경기장내 하수구 보수공사 등 목적물이 건축공사 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단일 공종이 토목 특성이 명백한 경우, 토목공사로 정의할 수 있음.

| 공사종류 | 내용 예시   |
|------|---|
| 건축공사 | <p>□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나'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동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구분한 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 및 이와 부대한 공사</p> <p>가. 건축공사업</p> <p>단독, 연립주택, 아파트, 상가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광공업용, 교육·사회용, 전통양식 건축, 그 밖의 건축공사 분야 포함</p> <p>나. 주 시설물이 건축공사에 부대한 전문 공사</p> <p>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 지방 건축물 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구조물</p> |

| 공사종류  | 내용 예시  |
|-------|--|
|       | <p>해체·비계공사업, 철강 구조물 공사업, 승강기·삭도 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기계가스설비 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그 밖에 분류되지 않은 공사 등</p> <p>단, 건축공사에 수행하는 공사로 하더라도 단일 공종이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또는 기타공사로 발주된 공사인 경우 제외</p>  |
| 토목공사  | <p><input type="checkbox"/>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가’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및 ‘라’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의 건설공사로서 동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구분한 토목공사 및 산업환경 설비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 및 이와 부대한 공사</p> <p>단, 중건설에 해당되는 공사는 제외</p> <p>가. 토목공사</p> <p>도로, 항만, 공항, 철도, 지하철, 하천·산림·농수산토목, 상·하수도, 택지·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공사 등</p> <p>나. 산업·환경설비 공사업</p> <p>산업생산시설, 쓰레기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에너지 저장·공급시설, 그 밖의 산업·환경설비공사 분야</p> <p>다. 주 시설물이 토목공사에 부대한 전문 공사</p> <p>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기계가스설비 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그 밖에 분류되지 않은 공사 등</p> |
| 중건설공사 | <p><input type="checkbox"/>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가’ 목 및 ‘라’목에 해당 되는 공사 중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부대한 공사</p> <p>가. 고제방 댐 공사 등</p> <p>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p> <p>나.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p> <p>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p>   |

| 공사종류   | 내용 예시  |
|--|--|
|  | <p>다. 터널신설공사 등</p> <p>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터널 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p>  |
| <p>4. 기타<br/>건설공사</p>  | <p>「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마’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 등의 건설공사로서 동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구분한 조경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와 개별 법령으로 수행되는 기타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수리)로 분류된 공사와 이와 부대한 전문 공종 공사</p> <p>가. 조경공사업</p> <p>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사, 정원 등의 조성공사</p> <p>나. 개별 법령에 따른 기타 공사</p> <p>「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 등에서 정한 공사와 이와 부대한 전문 공사</p> |
| <p><b>&lt;공사종류 판단기준 예시&gt;</b></p> <p>■ 여러 종류의 공사가 혼합(병행, 분리발주)되어 있을 경우, 주된 공사에 따라 공사종류를 구분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주된 공사는 해당 공사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공사 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공사인 경우에는 대상 시설물이 건축공사면 건축공사로, 토목 또는 산업설비 공사는 토목공사로 구분할 수 있음. 또한 분리발주되는 전기, 정보통신공사 등은 대상 시설물이 건축공사면 건축공사로, 토목 또는 산업설비 공사는 토목공사로 구분할 수 있음.</p> |  |

**연구진**

연구기관 :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책임자 : 오세욱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창원 (한국조달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 서정훈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 홍유나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 백용선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상대역 : 박주동(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

강성윤(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과장)

**연구기간**

2022. 04. 04. ~ 2022. 10. 31.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22년도 위탁연구 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검토**  
**(2022-산업안전보건연구원-869)**

**발행일** : 2022년 10월 31일

**발행인**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김은아

**연구책임자** :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세욱

**발행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소** :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

**전화** : 052-703-0844

**팩스** : 052-703-0334

**Homepage** : <http://oshri.kosha.or.kr>

**I S B N** : 979-11-92782-65-02

**공공안심글꼴** : 무료글꼴, 한국출판인회의, Kopub바탕체/돋움체